

인권정보자료실
Md1.7

장애인의 인권 보고서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1810-3
Tel. 053)954-0170~1
Fax. 053)956-4108
홈페이지 www.domi.or.kr

Md1.7

I. 정인지체장애인 최경아 씨 사망사건

최경아 씨 사망사건 진상규명 경과

최경아 씨 사망사건을 통해서 본 장애인의 인권

최경아 씨 의문사 사건일지

II. 교도소 및 구치소 내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III. 파출소·경찰서·경찰청 내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IV. 기타사례

성경에서 장애인 관련용어 변경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인권 보고서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 목차 •

여는글 ■ 장기철/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4

격려사 ■ 돈명스님/거조암 주지·대구지체장애인협회 후원회 회장 5

인터뷰 ■ 글. 이현석/대구장애인인권위원회 간사 6
“인권위원장에게 듣는다”

우리는 왜 장애인 인권을 말하는가 ■ 송덕준/대구지체장애인협회 기획실장 8

장애인 인권법주 10

I. 정신지체장애인 최경아 씨 사망사건

최경아 씨 사망사건 진상규명 경과 16

주거대책비 지급여부 확인서류 17

최경아 씨 사망사건을 통해서 본 장애인의 인권 18
윤종화/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부장

최경아 씨 의문사 사건일지 20
김명희/장애인복지신문 대구지사 기자

제보 23

밝은 내일(장애인인권찾기회) 공문 25

성명서 26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영남일보 5단광고)

진정서 28
1.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2.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 윤수동

보도 모음 33
시청자 의견·성명서·호소문·옥외집회 신고서·진정서

II. 교도소 및 구치소 내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대구구치소 장애인 수용 현황 66

교정시설별 장애인 수감 현황 69

교도소 및 구치소 내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경과보고 73

기고 ■ 이원형/국회의원 75
갈길 먼 장애인 인권의 길

조사현황 자료 77
(공개질문에 대한 답변서) 1. 대구구치소 2. 대구교도소

보도 모음 79

III. 파출소·경찰서·경찰청 내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파출소·경찰서·경찰청 내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경과보고 90
1. 경찰서·경찰청 2. 파출소

조사현황 자료 92
(공개질문에 대한 답변서)
1. 지방경찰청 2. 기동수사대 3. 여자기동수사대 4. 동부경찰서
5. 남부경찰서 6. 북부경찰서 7. 중부경찰서 8. 수성경찰서 9. 달성경찰서

보도 모음 103

IV. 기타사례

기타 사례 124
1.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
2.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
3. 지체장애인에 대한 폭행사건

성경에서 장애인 관련용어 변경 126

보도 모음 127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13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135

부록 142
1. 세계인권선언 2. 장애인 인권헌장 3. 장애인 권리선언

편집후기 149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장 기 철

장애인 문제, 우리 스스로 적극 나서야...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존경하는 회원 동지 여러분!

위의 글은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너무도 귀에 익숙한 '장애인 인권헌장'의 일부입니다.

장애인 역시 마땅히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아울러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함을 명시한,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회원 동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지위고 하나 빈부격차와 아랑곳없이 결코 변치 않고,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간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마저도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박탈당하는 게 장애인들의 현주소입니다. 편견에 따른 사회적 소외는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들은 원초적으로 불평등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언제나 우리 사회의 아웃사이드에 머물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때 대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최경아 씨 사건 해결을 비롯, 경찰서, 교도소 등 국가권력으로부터 행해지는 각종 장애인 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은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회원 동지 여러분!

이제 장애인 인권문제는 대구지체협회의 활동에서 보듯 우리 스스로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으로 옮길 때 이 땅의 모든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날이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음을 명심하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자세를 가다듬읍시다.

회원 동지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장 기 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돈 명 스 님

장애인 인권은 시대적 과제...

안녕하십니까?

우선 장애인 인권백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이 일은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인데 이 문제에 관한한 그간 사회적인 인식이 낮았을뿐 아니라, 이 일을 해 낼 수 있는 인력 또한 준비되지 않아 오늘날까지 지체되어 왔으나 이제 서야 주인을 만나 이 일이 완성된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함으로써 이제 인권의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아직까지 후진적인 인권 사각지대의 어두운 그늘이 점차 걷히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부당하게 제약되고 억압되고 있는 인권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각 분야가 아직까지는 인권후진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지만 오늘의 현실입니다만, 특히 장애인의 인권은 타 분야에 비해 더욱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 자신들의 소극적 사회활동에 의해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 최경아 양 사건은 오늘날 우리 장애인 인권 현실을 되돌아 볼 수 있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습니다. 힘 없고 신체마저도 정상적이지 않은 한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가혹한 차별과 타살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최경아 사건은 이 사건으로 인해 법정에서 실형을 언도받은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하는 하나의 중요한 잣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폐되어 영원히 미궁에 묻힐뻔한 사건이 대구 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의 노력과 언론 및 많은 뜻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이 정도나마 진상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애쓰신 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리면서 이 장애인 백서가 다시는 이땅에서 최경아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을뿐 아니라, 전체 장애인들의 인권보호와 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돈 명 거조암 주지 ·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후원회 회장



윤수동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구협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대구지부장
대구장애인인권위원장

“인권위원장에게 듣는다”

글. 이현석 /대구장애인인권위원회 간사

■ 대구시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현황은?

대구시 인권위원회는 대구시협회 위원 5명, 8개 지회 75명을 합해 모두 8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올해 인권위원회의 주요 목표는?

2001년 대구시 인권위원회의 주목표는 바닥에 다다른 장애인권을 끌어올리는 단초를 마련하는데 있다. 장애인권의 폐해는 크게 두 가지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시책에서 외면당하는 부분, 사회일반에서 소외당하는 부분이 그것인데, 우리는 그 첫번째로 국가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소외에 맞서는 일들을 하려 한다. 대구지역에 있는 경찰, 검찰, 법원, 행정 관공서 등에서 행해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집중적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법에 보장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는 기본적으로 포함시키는 물론 각 기관에서 행하는 장애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경찰·검찰의 수사과정에 있어 피해를 받는 부분까지를 망라하는 종합백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장애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작업이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 장애인권을 개선할 것이다.

이 운동은 비단 대구지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중앙 인권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금년의 주요 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목표에 맞추어 결정된 몇 가지 사업이 있으며 현재 의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다. 우선 현재 지역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하면서 첫발을 내디딘 지역장애인 인권 종합백서를 완성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 장애인들은 우리 인권상황이 좋지 않다는 막연한 인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 지금 당장 결과물을 내기 위해 무작정 문제제기와 행동만 급하게 앞세워서는 곤란하다. 사회적으로 열악한 장애인권 개선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가면 된다. 현재 진행중인 다른 사업으로는 민간부문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과 인식에 대한 개선사업이 있다. 국가 이상으로 차별과 소외를 행하고 있는 민간에 의한 차별은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 공감할 것이다. 장애인이라서 차별 당하는 고용과 승진을 포함한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아직도 장애인을 사회의 짐처럼 생각하는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 바람직한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활동방향은?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는 장애인 인권헌장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이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감시하고 독려하는 것이 우리 인권위원회의 역할이라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을 일삼고 차별에 눈감는 국가와 사회의 행태를 밝혀내고 고쳐내는 일을 할려면 필연적으로 법과 제도에 맞설 수밖에 없으며, 그러기에 우리의 활동방향은 스스로의 힘의 결집과 모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하는 길이 될 것이다. 장애인인권은 보편적 인권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중에 하나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인권신장운동에 있어서 우리 인권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필요하면 다른 인권단체와의 협력도 해야 한다.

■ 대구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관심사가 된 최경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구인권위원회가 하고있는 일은?

1999년에 벌어진 최경아라는 한 장애인의 죽음은 인권위원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해 준 계기였다. 자칫 단순 자살로 세상 뒷편으로 묻힐뻔한 이 사건을 대구지체장애인협회 주도아래 끈질긴 문제제기 끝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담당 경찰과 검안 의사의 명백한 직무유기와 증거인멸의 죄가 밝혀지면서 국민들에게 장애인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2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은 직접 가해자만 실형 2년만을 선고받고 담당경찰관과 검안의사는 벌금형과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받았지만, 우리 대구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27일자로 제 사회단체와 함께 법원에 진정서를 올렸고, 법원은 2심 판결의 실수를 인정하여 항소과기심이 열렸으며, 이윽게 징역4년, 과무순(구의원) 징역1년·집행유예3년, 양문석(검안의) 징역1년·집행유예2년, 신창수(담당형사) 벌금1300만원을 각각 판결받았다.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모든 인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장애인 또한 존엄한 인간이기에 그러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장애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더욱더 보장받아야 마땅한 권리들이 있다. 이런 권리들은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든 억압과 차별을 거둬 버리는 그 첫 단추를 대구인권위원회가 앞장서 열어나갈 것이며 모든 장애인·비장애인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왜 장애인 인권을 말하는가

송덕준 / 대구지체장애인협회 기획실장

인권은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것

'인권'의 개념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변화·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이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힘들다. 인권은 시대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늘 변화되고 풍부해지는 역동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은 사람들이 처한 환경과 인간관계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권력을 쥔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는 인권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권이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인권이란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최저선 또는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이다.

이렇듯 '인권'은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우리 사회에는 아직 차별적 요소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장애인 문제를 깊숙히 들여다 보면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가 문제의 본질인 경우가 많다. 많은 장애인들이 호소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노동현실은 그들의 장애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편견과 차별의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단적인 예로 장애인들은 다른 이의 도움이 없이는 교통, 통신설비, 공공건물, 도로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

한 물리적인 장벽만으로도 장애인들의 교육, 직업 생활, 여가생활, 정치활동 등 사회참여에 있어서 엄청난 제한을 받게되며 이로 인해 자연히 사회적 고립과 격리를 당하게 된다. 또 물리적 환경이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나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장애인은 사회 곳곳에서 편견과 차별의 비애를 맞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신지체장애인 최경아씨 사망사건

그간 우리 협회는 장애인 문제가 인권문제에서 비롯된다는 확신을 갖고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신체적 핸디캡으로 인해 이 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특히, 1999년 5월 29일 발생한 정신지체장애인 최경아씨(30세) 사망사건에서 "집주인 이모씨의 상습적인 학대와 구타에 의해 사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등 진상규명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상대적으로 빼놓아진 제도와 편견을 신랄하게 고발했다. KBS추적60분 등 각종 언론의 집중취재를 통해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또다른 장애인들의 실상을 이끌어 내어 장애인 인권문제를 전사회적으로 부각시켰다.

국가권력으로부터 오는 인권침해

또 파출소, 경찰서, 경찰청 등 국가권력으로부터 당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었다. 특히 민사 또는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감시하고 구명해왔다. 초동 수사과정에서 국가권력이 장애인에게 가하는 공공연한 협박과 폭언은 늘 주변인으로만 살아온 그들을 주눅 들게 하기엔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서 내 유치장시설 개선에 대하여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지금에 이르러선 지역의 대부분의 경찰서에서는 시설을 개보수했으며 유치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인권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교도소와 구치소에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었다. 물론 교정시설 내에서 일정 부분 인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곳에 수감된 장애인들의 생활은 너무나 비참했다. 지난 2월부터 교정시설내 장애인편의시설과 장애인재소자에 대한 관리실태를 중심으로 조사를 한 결과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재소자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현재 대구교도소에는 75명, 대구구치소에는 23명의 장애인이 각각 수감 중이며, 이들을 일반재소자와 통합 수용하고 있었다. 적지 않은 장애인이 수감되어 있지만 장애인재소자에 대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장애정도에 따른 별도관리 등에 대한 지침이 전혀 없었다.

특히 일반재소자 방에 통합 수감되어 있을 경우 각종 따돌림과 폭행이 예상되는 정신지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이들 장애인에 대한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은 각종 폭행사건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또 지체장애인에게 필요한 좌식변기를 갖춘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시설 내 직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호칭을 몰라 지체불구, 농아자 등으로 표현해 장애인단체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물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장애인 특성을 무시한 재소자 관

리로 인해 장애인은 이중의 수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시설내 올바른 재소자 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 등과 같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겪는 인권침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부단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상의 것

우리 사회에서는 인권을 위한 많은 법들이 존재하고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인권은 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는 권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법이 보장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인간다움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인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인권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모든 것에 저항해야 한다. 그것이 자본이든지, 권력이든지, 법이든지, 폭력이든지 개의치 않고 사람다움을 쟁취하기 위한 어떠한 저항도 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 문제는 인권문제

앞에서 장애인의 문제는 인권문제로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결국 '장애인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또는 국가가 장애인의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시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복지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복지수혜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욕구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왔지만 이제는 이들이 실생활 속에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러한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에서만 어떠한 야만적 폭력과 핍박으로부터 장애인이 안전할 수 있으며 이 때 비로소 장애인 인권이 제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은
'모두가 누리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이 물음에
기회의 평등은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지만
결과적 평등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법에 명시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조항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차별에 따른 불평등 상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

❖ 「장애인 인권범주」는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글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에서 발췌했습니다

■ 건강권

우리 국민은 기본적으로 의료보
험제도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장애인도 전국민 의료 보험제
도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
다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는 경우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최근 적극적인 권리개념으로
건강권이 논의되고 있다. 건강권이
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
릴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일
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핸디캡이 없는 환경조
성, 자율성 보장 그리고 중증 장애인
중심의 재활 정책이 확립해야 한다.
장애인의 건강권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입을 정도의 사고
나 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사
회의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하겠다.

■ 거주이전권

장애인에게 있어 거주이전의 자
유가 보장되고 있는가. 생활시설에
서 살고 있는 장애인은 그 시설을 떠
날 수 없다. 공식적으로 보호자가 있
는 가정으로 다시 데려가거나, 그렇
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시설에서 생
을 마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이 시설
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 생활시설에
서 생을 마쳐야 하는 장애인의 경우
사실상 거주이전권이 없다. 장애인
의 거주이전권이 가능하려면 집을
빌리는데 거절당하는 문제를 해결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생활
시설의 경우 소규모화를 통해 지역
주민과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시설운영에 지역
인사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장애인
의 거주이전권이 확보될 수 있을 것
이다.

■ 접근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4조는 장애
인의 접근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
다.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
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들이 아닌 사
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
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
하고 장애인들이 아닌 사람이 접근
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한다." 그리고 장애인인권헌장
은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
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
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장애인의 접
근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권리가 주어진 명시
된 법이 있으나, 우리 사회환경은 몸
이 불편한 사람이 자유롭게 다닐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휠체어를 이
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우리 사회에
서 독립해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나라에

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집에
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
해서 지어진 집이 과연 얼마나 되겠
는가? 정부에서 계획하는 신도시를
설계함에 있어서나 주공아파트를 건
설하는데 잘 계획되고 살기에 좋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장애인의 편의시설은
매우 제한적인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접근권은 장애인이 독립생활이
가능성 정도에 따라 판단되어 진다.

■ 생존권

상당수의 장애인은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95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장애인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이 40만원 미만이 46.55로 절대 소득액이 극히 낮다. 이는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1백39만 8천 원과 비교해 보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직접 급부보정책은 장애인수당이 유일하다. 그것도 일부 생활보조대상자 정도의 생활수준에 있는 중증 장애인(1, 2급, 정신지체의 경우 3급)에게만 해당하는 월 4만5천 원의 생계보조수당이 전부이다.

장애인의 생존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노동능력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장애인의 경우 대상자격에 있어 적극 수용해야 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각종 수당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생계대책 작동을 통해 장애인의 생존권 확보가 이루어 질 수 있다.

■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편적 권리에 속한다.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 중에 하나가 교육권이다. 그런데 새삼 장애인에게 있어 교육권을 강조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

■ 노동권

대부분의 성인 장애인들은 만성 실업 상태에 놓여 있고, 일반 노동자보다 열배가 넘는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월 평균 실업률이 2.4%인데 반해 장애인 실업률은 27.3%이다. (1995. 복지부) 취업되어 있는 직종도 생산직 68.7%이며, 임금 수준도 20-40만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2%의 의무 고용토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으나 지난 9년 동안 0.51%만을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기업환경이 좋은 편인데 비해 오히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장애인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장애인 복지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격리수용차원의 장애인 전용공장 설립 등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것은 장애인 고용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웬만큼 합리적인 기업가가 아니면 생산성이나 능력을 판단하

을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교육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일 것이다.

50%를 넘는 많은 장애인은 교육 받을 기회조차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우리의 일반환경은 통합교육은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에 앞서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꺼린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이다.

이런 편견의 극명한 예가 있다. 언젠가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는 6명의 장애인 연수생들이 판사를 지망하였다. 당시 인사권자는 공식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용을 거절하였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장애인이 절룩거리며 법정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흉측하여 법정에 들어서게 되면 법정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를 들어 판사임용을 거절하였던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편견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취업이 더욱 곤란해지는 것이다.

장애인의 교육권은 일반교육현장에서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겠고, 이를 위해서는 일반학교에 특수교육 전공 교사를 배치해 장애아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동권

장애인이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다.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다닐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학교를 혼자서 다닐 수 없다. 그리도 어렵사리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대학 캠퍼스 내에서 조차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건물을 이용하는데 너무 힘들고, 원활하게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보조 장치가 없어서 계속해서 수학을 할 수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기도 한다.

버스에는 휠체어리프트 장치를 높이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이용가능 하도록 편의설비를 갖춰야겠고, 택시이용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문화향유권

장애인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상태이고, 문화와 레저는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사치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제공되는 문화적 활동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도 문화적 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어렵다. 이것은 방송매체, 문학, 교육장비, 문화시설 그리고 레크레이션 장치, 정보 등에 적용된다. 단적인 예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점자와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된 인쇄물, 이야기책 등의 서비스를

■ 보육권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일반 아동이 있는 가정보다 물적, 정신적인 부담이 훨씬 큰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의 정신지체아를 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직장을 가지기가 매우 힘든 형편이다. 왜냐하면 부모가 일하는 동안 하루종일 아니면 하루 중 일정시간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아이를 둔 부모들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볼 수 없을 환경에 처해 있거나, 장애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받기 힘든 형편이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문화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화비디오로 공급해야 하고, 매일 TV 뉴스를 수화나 자막처리가 필요하건만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혼자서 이동이 힘든 장애인 중에는 30년만에 처음으로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셨다거나 40년만에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다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은 모든 사람이 누리고 있는 문화와 여가생활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가 사회 물리적인

환경이 원인이 되었던 생계문제가 우선 해결되지 않아 문화나 여가 생활은 아직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사치로 생각해서든 어쨌든 적지 않은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원활하게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이 확보되기 위해 제도적인 자원은 물론 '장애인 문화 1%나누기 운동'을 통해 국민이 장애인과 함께 문화공유 기회의 확대를 통해 장애인문화향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선거권

장애인복지법 제23조는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설비의 설치,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매년 선거 때마다 장애인들이 투표를 할 수 없는 물리적인 환경과 적절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정보접근이 막혀 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정신지체인의 경우 후보자 선택에 있어 실제로 가능한 방법을 정신지체인 부모들은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참정권 실현은 선거권이 평등하게 실현되어야 가능하다. 모든 국민이 누리는 참정권을 장애인들에게는 공평하게 그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권은 사회 완전 참여와 평등이 실현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생활권

지역사회의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지방자치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복지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사회적 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체가 지방적 욕구와 조건에 따른 서비스가 가능하게 한다. 모든 지방정

■ 정보접근권

정보는 숨쉬는 것과 같을 만큼 사회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만일 정보 없이 살아가려면 차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고 운행하라는 것과 같다. 그런 지금 우리 사회는 소외계층의 경우, 특히 장애가 있는 경우 더욱 더 정보에 소외되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장애, 청각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시각장애를 가진 경우는 정보접근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어, 이들을 위한 소프트웨어개발과 지원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 보행권

자동차 중심의 도로정책은 이동 환경을 엉망인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휠체어이용자, 시각장애인 등에서 있어 인도(人道)는 단지 불편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위험지역에 가깝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마음 놓고 길을 권리조차 막혀 있어 보행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는 시설에서 살지 않는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 조직된 가정보조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인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른 지자체별 특별 복지서

비스가 개발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들과의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신지체장애인 최경아 씨 사망사건

최경아 씨 사망사건 진상규명 경과	16
주거대책비 지급여부 확인서류	17
최경아 씨 사망사건을 통해서 본 장애인의 인권	18
윤종화/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부장	
최경아 씨 의문사 사건일지	20
김명희/ 장애인복지신문 대구지사 기자	
제보	23
밝은 내일(장애인인권찾기회) 공문	25
성명서	26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영남일보 5단광고)	
진정서	28
1.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2.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 윤수동	
보도 모음	33
시청자 의견 · 성명서 · 호소문 · 옥외집회 신고서 · 진정서	

최경아 씨 사망사건을 통해서 본

장애인의 인권

윤종화 / 대구장애인대 작은권리찾기 부장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얘기한다는 것은
역으로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장애인 인권 침해는 폭행 등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의 문제로만 돌릴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양산하는
사회적 보호장치(법과 제도, 인식)가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대구 장애인 최경아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문제가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최경아씨 사망사건은 몇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장애인이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본 사건이 1차 수사에서 자살로 종결되었던 배경에는 장애인의 죽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철저히하고도 조직적으로 타살을 은폐하지는 못했을 것이며,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서둘러 자살로 종결짓지 않았을 것이다. 오로지 장애인의 죽

음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자살로 종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재수사를 촉구하여 그나마 억울한 죽음에 대해 원혼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몇 년전에 있었다. 강릉지역에서 정신지체 여성에 대해 한 마을의 남자들이 7여년간 성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또한 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으나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가해자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위 두 사건에서 보듯이 피해자(또는 주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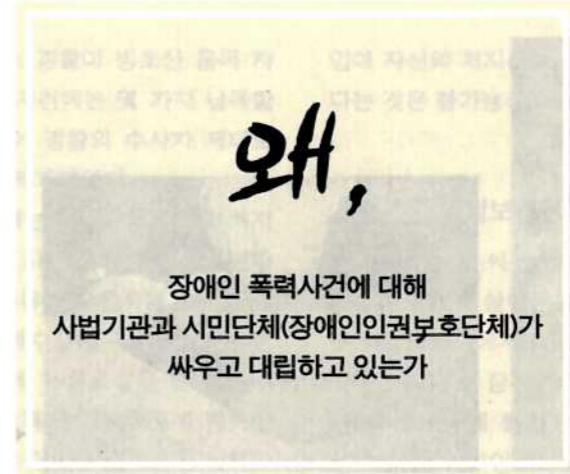
가 폭력을 고발하여도 법과 제도의 미흡과 수사기관의 인식의 저급함으로 인해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는 매우 힘들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얘기한다는 것은 역으로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장애인 인권 침해는 폭행 등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의 문제로만 돌릴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양산하는 사회적 보호장치(법과 제도, 인식)가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폭력(성폭행), 직업, 사회생활, 시민권리 등 장애인 권리

문제는 매우 다양하다. 직업과 사회생활, 시민권리는 논외로 하더라도 폭력으로부터 장애인의 인권은 그 성격상 다른 문제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폭력적 인권침해는 가정과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에 알려지기가 어렵다. 몇몇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폭력에 대한 저항력이 없으며,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관계기관에 고발하여도 사건 개요를 정확하게 진술하기 힘들다는 점, 또한 폭행(성폭행) 가해자 대부분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인권은 유린된 채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것이다. 특히 성과 관련된 폭행은 성피해를 숨기기에 급급한 우리사회의 모습과 결부되어 더욱 심각할 것이다. 그동안 시설에 보호된 장애인에 대한 조직적 폭력은 인권단체 등에서 수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그나마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가정과 생활주변 등 사적영역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취약하다. 굳이 장애인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노숙자, 절대빈민층, 노인, 모자가정 등에 대한 보호시스템은 시설수용 또는 일시적 경제적 지원 등이 대부분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의 핵심은 자립과 자활이며, 공공적 과제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인권보호 문제도 동일하다. 지금까지 장애인 폭력사건이 대부분 공공영역이 아니라 시민단체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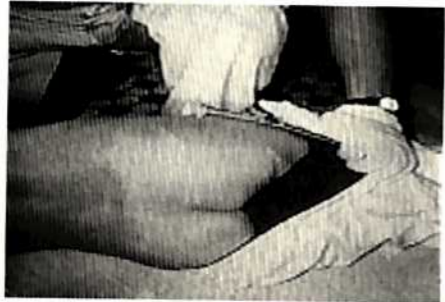


는 사적영역에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그나마 권리구제에 이르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는 항상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진다. 왜, 장애인 폭력사건에 대해 사법기관과 시민단체(장애인인권보호단체)가 싸우고 대립하고 있는가이다. 이러한 의문이 현재 장애인에 대한 공공적 권리구제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폭력으로부터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사법기관의 인식의 변화를 거론해야 한다. 또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건해결과정에 조력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험이 풍부한 인권단체 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필요사항으로 강제하는 방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법과 제도적인 보호가 미비하고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장애인 인권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최경아 씨 의문사 사건일지

김명희 / 장애인복지신문 대구지사 기자



◀ 온 몸에 피멍이 든 흔적은 타살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 한 여성장애인의 죽음 |

1999년 5월 29일 대구시 이천동의 한 가정집 지하실에서 30세의 여성이 죽은 채 발견되었다. '최경아'라는 정신지체 장애여성이었다. 이 주검에 대해 검안의와 경찰은 '빙초산을 먹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정했고 시신은 다음날 최 씨의 집주인 이모 여인(69세)에 의해 화장 처리되었다.

그런데 2000년 2월 최 씨의 죽음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이하 대구지장협)에 '최 씨가 빙초산을 먹고 자살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인 이 씨의 상습적인 학대와 구타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제보가 접수된 것이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남부경찰서와 대구지방경찰청에는 연일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장애인단체들은 수차례 대규모 집회를 가지며 이 사건을 쟁점화시켰다. 또 지방언론과

장애인복지신문, 그리고 KBS한국방송 추적60분이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고,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다.

2000년 5월 10일 이씨는 학대 및 상해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고, 이씨를 도와 변호사를 서둘러 화장해 증거인멸을 피한 세 사람 - 당시 초등수사를 담당한 남부경찰서 형사 신모씨(43세), 남구의회 구의원 곽모 씨(40세), 사체를 검안한 의사이자 이 씨의 사위인 양모 씨(52세) - 기소돼 지난 11월 6일 선고공판에서 이 씨는 6년, 나머지 세 사람에게는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 최경아 씨 사망과 관련한 의혹들 |

자칫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한 정신지체 장애 여성의 죽음이 지역사회에 이토록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 까닭은 무엇일까. 경찰이 빙초산 음독 자살 사건으로 파악한 이 사건에는 몇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들이 있어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의혹이 제기되었다.

첫째, 당시 수사기록에는 최 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판, 빙초산을 먹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며 빙초산이 담겨있던 우유병과 유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우유병을 검사한 결과 '병 속에 독성물질은 전혀 없었다'고 회신을 보내왔다. 특히 사망현장에 빙초산 병이 없고 우유병만 놓여 있었다는 사실은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또 자살의 결정적인 단서인 유서라는 것도 죽기 몇 개월 전에 쓴 메모 형식의 일기라는 점이다.

둘째, 수사기록은 외상이 전혀 없고 타살의 흔적이 없어 자살로 판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의 정황을 찍은 사진에는 최 씨의 얼굴과 몸 여러 곳에 명백한 타박상이 있고, 당시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이 씨의 사위라는 점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셋째, 최 씨의 시신이 죽은지 하루만에 곧바로 화장 처리된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설 장애인들이 겪는 일을 최씨는 시설 밖에서 당했는데 이 때문에 정확한 사인규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더더욱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집주인 이 씨와 최 씨가 아무런 법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음에도 시신이 이 씨에게 넘겨졌다는 것이다.

넷째, 정신지체장애인이 자살을 했다는 기록은 장애인관련 문헌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는 사실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지능지수 62의 정신지체장애

최경아 씨 어릴때 모습 ▶



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여 유서를 쓰고 자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이 씨와 영남보육원과의 관계 |

그렇다면 최 씨는 왜 이 씨 집에서 10년간이나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것일까. 최 씨는 1975년 대구 백합보육원에서 2주간 일시보호되었다가 영남보육원(구미시 장천면)으로 보내졌고, 십여년 전 다시 이 씨에게 불법인계되었다. 지능지수 62의 정신지체장애인이인 최 씨를 이씨는 몸종처럼 부리며 갖은 학대와 구타를 일삼았다고 한다.

이 씨의 학대는 비상식적이다 못해 병적적이까지 했다. "이 씨가 최 씨의 팔을 뒤로 젖혀 손목을 묶은 상태에서 나무대끼를 끼워 눕혀놓고 등위에 발로 밟고 올라서서 폭행하는 것을 보고 만류한 적이 있다"는 이웃 주민의 말. "죽기 하루전인 28일 최 씨가 심하게 폭행당했는지 얼굴이 붓고 상처투성이가 된 채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는데 이 씨가 저녁에 다시 플라스틱 휴지통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밥을 굶겼다"는 가정부의 증언이 그렇다. 그 외에도 최 씨에 대한 이 씨의 학대에 관한 증언은 많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이 씨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 씨 이전에 이 씨 집에서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더 있었다는 주장이다. 추적60분은 '덕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최 씨와 마찬가지로 영남보육원에서 이 씨 집으로 보내져 학대를 당하며 생활한 사실을 밝혀냈다. 덕이는 정상지능을 가진 아이라 이 씨의 학

● 정신지체장애인 최경아 씨 사망 사건 제보

남구지역 장애인 의문사 진상조사건

신○○
2000년 2월 9일 16:25경 수신

● 제보자

대구인권연맹위원회 모여인

● 제보내용

1999. 5. 29. 13:00경 사망한 최경아(31세·여)의 의문이 있다는 제보

사망한 최경아는 죽기 전 약 10년 전 경북 구미인근 고아원에서 인권연맹부녀위원장 이옥례(70세, 여)로 입양되어 집에서 잡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여 오면서 평소 수차례 구타 및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하실 방에 감금되었는 것.

최경아를 마지막으로 본 대구 남구 이천동 소재 김모여인의 제보로는 1999. 5. 28. 13:00경 최경아가 사망되기 전까지 거거한 주소지에서 이옥례가 구타한 것으로 보이는 얼굴에 상처 및 얼굴이 부어 올랐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 일어설지도 못한 것을 병어리 흉내로 맞았느냐 하자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았다고 함.

몇일이 지나서 이옥례는 동네 주민들에게 경아는 멀리 인천으로 시집을 보냈다, 식초를 먹고 죽었다, 자살을 했다는 등 소문이 있어 그날 있었던 것이 의심이 감.

평소 이옥례는 경찰서 및 검찰청 등 관변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남구청소속 구의원 광무순과 같이 행동하고, 사망 당일날도 업무를 보고 광무순과 인권연맹위원 이○○여성위원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여 이맹부는 돌려보내고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 평소 행동과 달리 곧장 지하실로 달려가서 죽은 최경아를 확인한 것이 의심이 가는 것은 이옥례는 최경아에게 양모로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의심 됨.

● 제보자

이옥례의 가내에서 가정부로 있었던 ○○엄마

● 제보내용

최경아는 평소 이옥례가 밥을 제대로 주지 못하여 배불리 밥을 먹지 못하였고, 잘못이 조금 있어도 구타하여 지하실 방에 가두어 놓고 밥을 주지않았다고 함.

최경아가 사망되기 하루 전날 1999. 5. 28 저녁시간 이옥례가 다시 구타를 하고, 밥을 주지말고 퇴근하라고 하여 퇴근하였고, 최경아는 그날 저녁에 죽은것으로 생각된다고 함.

최경아는 글씨 작성을 할 줄 모르는데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을 하였다고 하고 약을 구입할 지능으로 보이지 않고 자살할 이유가 있으면 이옥례 집에서 도망을 가지 않았겠냐고 생각된다고 함.

평소 이옥례는 인권연맹위원회의 부녀위원장으로써, 남들보다 더 잘 해주어야 할 저능아를 밥을 주지않고 지하실에서 감금 및 구타를 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관변단체에 가입하여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였다고 함.

대를 못이겨 한차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보다 못한 이 씨의 측근이 몰래 탈출시켜 지금은 결혼해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씨 집에 그들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최경아와 덕이가 똑같이 영남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영남보육원과 이 씨가 어떤 관계이기에 아동을 불법적으로 인수인계 했을까. 영남보육원은 이사장의 아동학과와 원장의 횡령 등의 문제로 올해 초 자진 폐쇄한 아동복지시설이다. 보육원의 천 이사장과 이 씨는 '한국인권보호연맹'이란 단체의 소속으로 20여년 전부터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들은 그 외에도 여러 관변단체의 간부를 지낸 경력이 있다. 게다가 영남보육원의 천 이사장은 지난 93년 보육원 여자원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적이 있고, 작년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항소 파기심 판결 선고 |

2000년 6월 16일 1차 공판에서 4명의 피고는 검사의 사건심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수 차례 계속된 공판을 지켜보지 위한 장애인들로 법정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눈물과 울음 섞인 호소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이 씨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장애인은 참다못해 "장애인 팔아먹지 마라"고 소리를 질러 즉결에 넘겨지기도 했다. 법정소란이 세 차례나 발생할 정도로 이 사

건에 대한 장애인들의 분노와 관심은 지대했다. 11월 6일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실형 6년, 나머지 세 명에게는 각각 1년씩 선고되자 법정에 있던 장애인들은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첫째, 최 씨의 얼굴과 팔뚝에 멍자욱들로 학대받은 사실이 입증되고 둘째, 유서라는 것이 죽기 5개월 전에 작성된 메모인데다 정신지체인인 최 씨가 미리 유서를 썼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 자살로 보기 어렵고 셋째, 자살하는 사람이 빙초산을 먹고 뚜껑을 달 수 없음에도 뚜껑이 닫혀있고, 빙초산 음독시 극심한 고통의 흔적이 전혀 없고 넷째, 외부의 침입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자살로 단정, 서둘러 다음날 화장한 것은 증거인멸을 공모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2001년 2월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씨는 징역 2년, 나머지는 벌금형과 무죄 선고를 받았다. 여기서 재판부는 가혹행위와 상해 및 허위검안서 작성 등의 혐의는 인정하나 이 씨가 고령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심보다 4년이나 줄어든 2년형을 선고했으며 신 씨는 17년동안 공무원으로 봉사한 점을 들어 벌금 1,000만원의 가벼운 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대구지장협과 지역 장애인들은 대구참여연대와 대구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공동으로 진정서를 올렸으며 2001년 6월 대법원에서 항소심 파기 결정을 내렸으며 2001년 10월 재항소심에서 이옥례 징역4년, 광무순(구의원) 징역1년·집행유예 3년, 양문석(검안의)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신창수(담당형사) 벌금 1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성명서

길고 지루했던 최경아 사망사건의 1심재판 최종 선고공판이 막을 내렸다. 충격과 분노를 삭이며 재판과정을 지켜보았던 대구의 25만 장애인에게는 다소 아쉽긴 했지만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한 최종공판이었다.

장애인을 개처럼 부려먹고 학대한 때의 사나움은 간데 없이 "억울하다"며 법정에서 울며 매달리는 그들의 비굴과 교활함에 우리는 구역질을 참아

력이 난무하는 고작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또 다시 힘겹게 살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 사건을 재심 청구하고 함께 지켜봐 온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의 회원들과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를 불이익을 감수하고 증언대에 나서주신 여러분들, 미궁으로 끝나버렸을지 모를 이 사건에 확신을 갖고 전국에 공개해 여

-최경아 사망사건 최종공판에 대한 우리의 견해-

가며 재판을 지켜봤었다. 자신들의 폭력과 구타에 차가운 지하실 바닥에서 29년 세월을 짓밟히다 죽어간 여성 장애인에 대한 미안함은 커녕 억지논리와 거짓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들의 추악함에 몸서리를 치며 재판을 지켜보았다. 도무지 염치와 체면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던 그들에게 내려진 법의 첩되는 차라리 너무도 가벼운 것이었다. 눈물나게 비참한 생을 살다간 장애인을 죽인 죄의 대가가 고작 6년형이라면 그들에게 너무도 가벼운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거가 철저하고 악랄하게 인멸된 가운데 정황과 심증뿐이라는 현실 속에서 실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재판장께서 얼마만큼의 갈등과 고심 가운데 판결을 내렸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재판장의 진심 어리고 정의로운 판결이 아니었다면 힘 없는 장애인이 힘 있는 비장애인에 의해 학대받다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죽어간 이 사건이 자칫 증거제일주의라는 우리사회의 법리에 묻혀 미궁으로 끝나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랬더라면 곱질은 선진복지사회이고 속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폭

론을 불러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KBS 2TV 추적60분" 담당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생업에 큰 지장을 받아가면서도 묵묵히 인내해가며 사건조사에 협조해 주셨던 봉덕시장의 많은 상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사건을 맡아 진상규명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검사님과 진심어린 판결을 해 주신 재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정신지체장애인의 단순 사망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 한번 제대로 찾아보지 못하고 10년 가까이 억울한 세월을 살다 죽어간 최경아 씨의 모습은 이 사회를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장애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아직도 사회의 곳곳에선 차별과 편견의 차가운 벽에 갇혀 고통으로 신음하는 장애인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최경아", "제3의 최경아"가 아직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시설의 장애인들을 데려다 착취하고 핍박하는 이들이 아직 세상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선언한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탄압과 핍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나갈 것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아무런 기약도 미래도 없는 장애인들이 아직 세상에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핍박과 착취가 계속 자행되는 한 우리는 대구지역

25만 장애인을 대신해 감시하고 싸워 나갈 것이다.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전혀 새삼스러울 것 없는 진리를 되짚으며 다시는 "장애인 최경아 씨 의문사"와 같은 만행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굳은 바람으로 우리는 끝없는 싸움을 계속 할 것이다.

2000년 11월 8일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 윤수동

정신지체장애인 최경아 씨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대구 지역 25만 장애인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 전국환경운동연합 정학 공동대표
- KBS 2TV 추적60분 황용호 PD
- 장애인복지신문 대구지사 김명희 기자
- 법률자문 임철 변호사, 최봉태 변호사
- 대구 지역 장애인 단체 및 단체장
- 영남보육원 전 보육사 선생님들
- 대구 봉덕시장 상인 및 봉덕동 주민 여러분
- 영남일보 이재운 기자
- 내일신문 박종면 기자
- 경찰일보 대구지사 신용대 기자
- 의료자문 박인휘 교수
-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 여러분

그 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격려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

- 사단법인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 윤수동
- 동 구지회장 김기대
 - 서 구지회장 장영휴
 - 북 구지회장 박병인
 - 수성구지회장 권재권
 - 중 구지회장 최태능
 - 달서구지회장 전학중
 - 달성군지회장 정우선

* 영남일보 2000년 11월 8일 5단광고

진정서

진정인 :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 윤수동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원유술·김민남
대구환경운동연합 의장 이호철

피진정인 : 이옥례 외 3인

우리는 지난 2001년 2월 15일 대구 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국환)가 이옥례, 신창수,곽무순, 양문석 피고인에게 내린 선고를 보며 충격과 허탈감을 삭일 수 없습니다. 이옥례는 1심에서 정신지체장애인 최경아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 및 허위검안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고령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보다 4년이나 줄어든 2년을 선고했으며, 신창수는 17년 동안 공무원으로 봉사한 점을 들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11월 8일 영남일보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부분의 증거가 철저하고 악랄하게 인멸된 가운데 정황과 심증뿐이라는 현실 속에서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께서 얼마만큼의 갈등과 고심 가운데서 판결을 내렸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며 감사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재판장의 진심어리고 정의로운 판결이 아니었다면 힘없는 장애인이 힘있는 비장애인에게 학대받다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죽어간 이 사건이 자칫 증거제일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법리에 묻혀 미궁으로 끝나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의 우려가 정말로 쓸데없는 걱정이었기를 바라며 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난무하는 이런 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대구 지역 25만 장애인들은 그야말로 어린애처럼 기뻐했습니다. 세상의 보잘 것 없는 장애인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만고의 진리를 되새기며 내 일처럼 기뻐했던 때가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을 학대하고 사망사건에 대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무려 4년이나 형량을 낮춰야 했던 이유가 고작 피고 이옥례가 고령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은 석연치 않습니다. 최경아는 피고 이옥례의 집에서 살았던 10년 세월동안 개처럼 학대받고 모진 폭력에 시달렸으며 죽을 때까지 누구하나 돌보지 않았던 서러웠던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경아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더 이상 밝힐 수 없더라도 재판부가 인정한 구타 및 학대 사실은 그녀가

‘죽음’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여성장애인이 이처럼 비통한 삶을 살다가 지하실 바닥에서 이름 없이 죽어가도록 방치했던 우리 사회의 죄가 너무 크고 중한데,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단죄하지는 못할망정 법은 그들에게 이토록 관대하고 너그럽기에 우리는 분노와 실망감을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명서에서 “염치와 체면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던 그들에게 내려진 법의철되는 차라리 너무도 가벼운 것이었다. 눈물나게 비참한 생을 살다간 장애인을 죽인 대가가 고작 6년형이라면 그들에게 너무도 가벼운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6년이라는 형량이 10년 동안 장애인을 사납게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죄의 대가로 결코 많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이나 감형된 2년형이라면 어느 누가 법의 엄중함과 정의로움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항하지 못하고 고발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에게 가하는 공공연한 폭력에 희생되고 있는 장애인이 얼마나 더 많을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밝혀졌듯이 제2의 최경아, 제3의 최경아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으며 그들은 또한 구타당하고 학대받으며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 재판은 그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학대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죄가 얼마나 무거우며 비윤리적인 행위인지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로 선례를 남기지 않는 한 여전히 같은 만행은 자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 모의한 자들에게 내려진 가벼운 벌금형과 무죄 선고는 또 다시 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공무원으로 17년을 ‘봉사’ 했기 때문에 형량을 줄였다는 선고 역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망 다음날 서둘러 화장해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공무원으로 17년을 ‘봉사’ 했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봉사’를 했는지 알 길은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평생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한 힘없는 장애인의 편에서 ‘봉사’ 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서민을 위해 봉사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봉사’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경찰 공무원의 존재 목적이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모쪼록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이 있기를 바라며 대구지역 25만 장애인과 함께 진정합니다.

2001년 2월 25일
대법원장 귀중

진정서

진정인 :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 윤수동
주소 : 대구 동구 신암4동 1810의 3 (☎954-0170)

피진정인 : 이옥례
주소 : 대구 남구 이천2동 491-59

진정인은 1999. 5. 29 대구 남구 이천2동 491-59번지에서 사망한 진정의 최경아의 사망에 상당한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진정합니다.

다 음

1. 피진정인 이옥례는 70여세의 여자로 대구지방검찰청 범죄예방협의회부회장, 남부경찰서 선진질서회장,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대구·경북부위원장, 칠곡읍내중학교 교화부회장직등을 겸임하면서 재력과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있는 지역인사입니다.
2. 피진정인은 최경아를 약 10년전 경북 구미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한 고아원으로부터 입양한 후 자신의 집에서 심부름 등을 시켜 왔는데 최경아는 자신의 나이도 모를 정도의 지능이 낮은 정신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3. 진정의 오○○(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대구·경북시도의원)는 피진정인과 함께 약 12년정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피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최경아를 알게 되었는데 피진정인은 평소 망 최경아가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고 폭력을 행사하고 끼니를 굶기고 지하실에 감금하는 등 심한 학대를 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의 이웃주민들도 최경아가 피진정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등 학대 받아 온 사실을 잘 알고 피진정인을 비난하면서도 피진정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사실에 대하여 아무도 언급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피진정인은 약 4년전 망 최경아가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였다, 자신의 밥에 수면제를 넣었다며 없는 사실을 지어 내어 이를 기화로 최경아를 폭행하고 최경아가 폭행당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또 다시 폭행을 하는 등 망 최경아는 항상 얼굴과 신체 각 부위에 멍과 흉터가 없어지질 않았으며, 또한 피진정인은 망 최경아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할 경우에 지하실에 감금하여 음식을 굶기고, 자신이 외출하면서도 지하실에 감금한 채 현관문과 대문을 잠고 외출을 하여 최경아가 지하실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피진정인은 평소 최경아를 학대, 멸시하고 인권을 유린하여 왔습니다.
5. 피진정인의 수양 딸로 피진정인의 집안일을 도와 주는 성명불상 ○○엄마와 피진정인의 앞집 아주머니의 말에 의하면 1999. 5. 28 망 최경아가 심하게 폭행을 당하였는지 얼굴이 붓고 전신에 상처투성이가 된채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저녁에 다시 구타를 한 후에 자신에게 식사를 주지 말고 집에 가라 하여 귀가한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는 오○○, 김○○, 문○○, 장○○, 구○○(피진정인의 수양딸), ○○엄마, 피진정인의 이웃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6. 그런데 1999. 5. 29 14:00경 망 최경아가 피진정인의 집 지하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바, 위 최경아의 사망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째, 이웃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망 최경아가 사망하기 전날 오전에 집 옥상에서 망 최경아가 일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고, 또한 오후에는 욕실 및 고함소리와 함께 사람이 맞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었다는데 갑자기 자살하였다는 점

둘 째, 피진정인이 남구청 구의원 광무순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자마자 곧바로 지하실로 내려가 최경아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점과 글씨를 잘 쓸줄 모르는 최경아가 유서를 작성했다는 점

셋 째, 경찰에 최경아가 사망한 사실을 관할동사무소에만 신고하고 관할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넷 째, 최경아는 자살하기 위하여 약을 구입할 정도의 지능이 못되는데도 만연히 자살로 판단하여 최경아가 사망한 다음날 사인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최경아의 시신을 아침 일찍 화장한 점

다섯째, 1999. 5. 30 오후에 피진정인이 오○○, 문○○(남구바르게살기운동회장)과 함께 남부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적으로 교통과장, 형사과장, 서장을 만나고 돌아온 후 교통과장 신○○가 찾아와서 오○○, 락무순, 피진정인의 수양딸 구○○, ○○○엄마와 함께 지하실을 치우는 등 경찰의 협력적인 자세

여섯째, 피진정인이 최경아가 사망한 후 이웃주민들과 진정의 오○○등에게 최경아는 인천으로 시집갔다고 했다가 다시 초산을 먹고 죽었다고 한 사실 및 최경아가 밥에 수면제를 넣어 자기몸이 아프다, 최경아가 없으니 마음이 편안하다는 말을 하는 등 피진정인은 최경아의 사망에 대하여 양모로서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 선뜻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7. 피진정인은 1999. 12 말경에 최경아의 사망에 대하여 진정의 신○○(경찰일보기자로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대구·경북시도의원)와 오○○등이 의문을 가지자 오○○, 수양딸, 이웃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위협하고, 2000년 2월 9일 밤10시경에는 잘 지내자며 오○○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오○○에게 욕설을 하면서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에서 제명시키겠다고 위협을 하였는데 그 후 위 신○○와 오○○는 피진정인의 의도에 따라 위 연맹에서 제명되었습니다.

8. 따라서 최경아의 사망에는 상당한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자살로 판단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되어 진정하오니 망 최경아의 사인과 피진정인의 망 최경아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시어 한 장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혀주시옵길 진정합니다.

2000년 3월
위 진정인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윤수동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영남일보

정신지체자가 유서·독극물 구입? 「장애인 의문死」 재수사 요구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검찰에 진정서

작년5월 대구 이천동 30대 여자 사망사건
정확한 사인 밝히기 전 서둘러 시신화장
경찰, 구타흔적에도 부검않고 자살결론

자살로 처리된 한 정신지체장애인의 사망사건과 관련, 장애인 단체들이 사인(死因)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상규명 및 수사기관의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회장 윤수동)는 지난해 5월 대구시 남구 이천동 가정집 지하실에서 사체로 발견된 최경아 씨(여·당시 30세)의 자살사건에 의혹이 있다며 지난 4일 '장애인 인권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최근 대구지검에 제출했다.

당시 최 씨 사망사건을 수사한 대구남부경찰서는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특정 독극물로 추정되는 약물을 담은 병과 구토흔적, 외상의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자살로 결론을 내리고 하루만에 내사종결했다. 사체는 최 씨를 양녀처럼 데리고 있던 이모 씨(여·69)에게 인계돼 사건 다음날 화장됐다. 최 씨가 남긴 3쪽 분량의 유서는 주로 '어머니' 이 씨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과 자신의 신세환탄 등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체를 검안한 개업의 Y 씨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와 이 씨가 동사무소에 제출한 사망 신고서에도 '사망종류: 자살' '선행 사인: 약물음독' '사고종류: 특정 독극물을 먹고 죽은 것으로 추정됨' 등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최 씨는 자신의 나이도

정확히 모를 정도로 지능이 낮은 정신지체장애인으로 유서를 남기거나 특정독극물을 구입해 자살하는 게 쉽지 않고 △평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구타 등 심한 학대를 당해왔는데, 사건 하루전에도 최 씨가 맞는 소리를 들었다는 인근 주민들의 증언이 있고 △사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시신을 다음날 아침 일찍 화장한 점 등을 들며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일부 증언자들은 경찰조사와는 달리 사건당시 최씨의 몸에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고 독극물을 먹고 자살한 경우 구토할 때 피를 함께 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같은 흔적이 없었으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일찌감치 자살로 결론을 내려 부검 등으로 사인 밝힐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수사상 문제제기도 제기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도 13일 "자살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어 타살가능성을 생각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씨 사망사건의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은 주로 최 씨 이웃주민들로서, 이들이 장애인단체 등에 진상조사를 협조를 의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은 이번 형사 4부에 배당하고 13일 경찰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사망원인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윤수동 회장은 "최 씨의 사인을 밝히는 것은 물론, 최 씨가 평소 가까운 사람에게 구타를 당하는 등 심각하게 구타당한 장애인 인권문제도 제기하여 장애인 단체들과 연대해 대응하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윤 기자] liyliy@yeongnam.com

2000년 3월 15일

과연 음독자살인가? 독극물 유무 “논란”

「장애인 의문사」사건

감정의뢰 증거물 사체결 병
국과수 감정서 “독극물 음성반응”
경찰선 “방안 ○○酸 냄새 진동”
다른 확인·부검 없이 자살 단정

속보=장애인단체들이 경찰조사에서 자살로 처리된 장애인 최경아씨의 사인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영남일보 3월 15일자 31면 보도), 최씨가 자살하기 위해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독극물’을 담은 병을 검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가지의 실험에서 모두 음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서를 당시 경찰에 회신한 사실이 드러나 최씨 사망원인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따르면 사고당시(1999년 5월)현장에서 발견돼 최씨가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독극물인 ‘○○산(酸)’을 담은 병을 사건 발생 5일쯤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한 결과, 이 같은 회신(99년 6월 15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수사를 맡았던 대구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15일 “국과수의 시험은 청산염 등 6가지의 독극물에 한정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당시 검안의사의 소견도 그러했지만 수거된 병에는 ‘○○산’ 냄새가 났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과수 관계자는 18일 “○○산은 후각으로 충분히 확인될 정도로 냄새가 강하다. 증거물이 80g에 이르러 병을 개봉하면 냄새로 금방 알 수 있다”면서 “검사대상 물질이 ‘○○산’이 분명하다면 이를 놓쳤을 리 없다”며 경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경아 씨 사망사건과 관련, 사망진단서와 사망신고서에는 선행사인이 ‘약물음독’, 사고종류는 ‘○○산(酸)을 먹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분명히 기록돼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는 “○○산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 해부병리과 채종민 교수(법의학 전공)는 “회색시킴이 않은 ‘○○산’은 독극물이며 치사량은 90g정도”라며 “강한 부식성이 있는 이 물질의 음독은 삼킬 때 구강에서부터 통증을 유발해 다량을 음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맡았던 대구 남부서는 타살 흔적이 없고 유서와 ‘○○산’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병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자살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또 경찰이 자살로 판정한 주요 근거가 된 의사의 사망진단서와 동거인의 사망신고서 등에서 선행사인(死因)이 ‘약물음독’이고 사고종류는 ‘○○산’을 먹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남부서 관계자는 “사고당시 방안에서 ‘○○산’ 냄새가 진동했다.”고 밝혔지만 냄새를 맡은 방법 이외의 확인 작업이나 사체부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이에따라 경찰이 자살로 판명한 주요 근거가 된 ‘○○산’의 실체가 흔들리면서 최씨 사망사건이 더욱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이재운 기자] ljuljy@yeongnam.com

2000년 3월 20일

최경아씨 행적 둘러싼 새로운 의혹 제기돼

지난해 5월 29일 빙초산을 먹고 자살한 것으로 처리된 정신지체장애인 최경아씨(31세)가 보여 온 그동안의 행적을 놓고 관련자들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최씨의 사인 문제와 함께 거취에 대한 의혹이 새로이 불거지고 있다.

경북 선산군 장천면 하장동에 있는 최씨의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에 의하면 최씨는 87년 9월 21일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두 달 뒤인 11월 10일 ‘천특훈의 자’로 ‘재등록’되었고, 이를 후인 11월 12일 부산에 있는 이아무개씨의 형부인 ‘박판만의 동거인’으로 등재됐다. 이후 박씨가 사망한 후 이아무개씨의 언니인 이씨 앞으로 등재되었다가, 91년 10월 18일에야 이아무개씨의 세입자로 전입해 8년을 이아무개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당시 영남보육원 이사장인 천특훈씨(남·78)는 “최경아는 지난 86년 대구의 한 직물공장에 취업을 해 나갔으며, 이후 다방에 있는 최경아를 이아무개씨가 데려갔다”고 말했으며, 이아무개씨도 “천특훈씨 부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다방에 있는 최경아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해서 데리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최씨가 동거인으로 등재된 적이 있는 천씨나 이씨 모두 최씨가 동거인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여 최씨가 거취를 옮겨가는 과정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87년 11월 12일부터 91년 10월 8일까지 4년간 최씨가 동거한 것으로 나타난 부산의 이씨는 “등본에 최경아가 왜 동거인으로 올라있는지 모르겠다”며 “40년을 같은 집에서 살았고, 최경아가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웃주민들도 다 아는 사실인 만큼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꼭 밝혀야겠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또 “당시 동생인 이아무개씨가 두 명의 여성을 데려왔는데 그중 한 명인 최씨는 남포동에 살고 있는 언니집으로 보내졌고, 다른 한 명이 세 달간 같이 살았으나 돈을 훔쳐 달아난 이후 소식을 모른다”고 했다.

주민등록 말소와 재등록 과정에 증언 엇갈려 정상적인 절차 무시된 듯, 진상 밝혀져야

천씨 역시 87년 ‘천씨의 자’로 재등록된 데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처리한 것

같다”고 서로 발뺌을 해, 최씨가 거취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가 무시된 채 임의로 처리되었음을 드러내 보였다.

또 최씨는 직접 돌보지 않고 부산으로 보낸데 대해 이아무개씨는 “당시 최경아가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등 문제가 많아 언니에게 보내 제대로 교육을 받게 하려고 부산으로 보냈고 언니가 사망하자 데려와 수양딸로 삼았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상반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재등록이나 전입시 세대주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고, 또 주거지에 직접 가서 처리해야 가능한 일인만큼 누군가 의도적으로 도장을 위조해서 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 천씨나 이씨의 동의 없이 누군가가 임의로 재등록 절차를 밟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경아씨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김명희 기자]

2000년 3월 24일

“음독자살 정황 의혹투성이 누가? 왜? 사건 은폐했나”

KBS「추적 60분」, 영남일보 제기 「장애인 의문死」방영

검·경 재수사 결과
내달중 내보내기로

그동안 영남일보가 꾸준히 제기해온 장애인 최경아씨 사망사건과 관련된 의혹(영남일보 3월 15일, 3월 20일자 31면 보도)에 대해 KBS 2TV '추적 60분'은 최씨의 사인으로 판단된 음독자살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30일 밤 9시55분부터 1시간동안 '자살인가 타살인가'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추적 60분'은 당시 경찰수사가 사인으로 밝힌 '빙초산을 먹고 자살했다'는 것은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수거물 감정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당시 사체옆에 놓여있던 우유병 속에 담긴 물질이 빙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빙초산이라고 누가 가장 먼저 얘기했나'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검안의사는 경찰, 경찰은 검안의사가 먼저 얘기했다며 서로 미루고 있는 모습을 다뤘다.

또 최씨가 죽기 하루 전까지 심하게 구타당해 사체에 멍이 든 자국이 선명히 드러나 있는데도 자살로 판정되고 사건 바로 다음날 급하게 사체가 화장된 것과 부검 등의 과정을 밟지 않은 당시 수사의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

최씨가 초등학교 지능검사때 IQ 62로 3급 정신지체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새 사실도 밝혀졌다.(최씨 주변인들은 줄곧 그녀가 장애인이 아니었다며 장애인 단체의 사건개입을 비난하고 있다.)

'추적 60분'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 자살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된 △빙초산 △유서 △외부침입이나 타살흔적이 없었다는 등의 정황이 10개월여가 지난 지금은 모두 문제가 있는 판단이었음을 밝히고 "누가 왜 이 사건을 은폐시켰나"며 사건 은폐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최씨 사망사건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재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적 60분'은 다음달 중에 이 사건과 관련 검찰·경찰의 재수사 과정 및 결과 등을 방영할 계획이다.

[이재윤 기자] ljljly@yeongnam.com

2000년 3월 31일

“「장애인 의문死」은폐했다”

대구지검 동거인·경찰관·區의원 등 3명 영장

“양녀 삼겠다” 데려와 상습구타·학대
경찰, 外傷은폐 등 허위보고서 작성
사위 의사·친분있는 區의원도 공모

속보=대구지검은 그동안 영남일보가 제기해온 장애인 최경아씨 의문사와 관련, 최씨의 동거인 이옥례씨(여·68)와 당시 수사를 맡은 대구남부경찰서 형사계 경사 신창수씨(43), 그리고 남구 구의원인 곽무순씨(40)등 3명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형사 4부 손순혁 검사는 9일, 죽은 최씨의 동거인인 이씨에 대해서는 상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씨는 증거 인멸과 상습폭행 공범 혐의, 신씨는 허위검안서 작성 혐의 등으로 같은날 긴급 체포돼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이씨는 1992년 자신의 양녀로 삼는다는 명목으로 최씨를 구미 영남 보육원에서 데려와 사실상 하녀처럼 부리면서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트집을 잡고 상습적으로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최씨의 사체를 발견하고 최씨의 몸에 무수한 상처가 있어 잘못하면 최씨를 학대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위인 양문석씨(남부서 촉탁의사)와 평소 아들처럼 지낸 곽씨, 그리고 남부서 형사 신씨와 사인을 은폐하기로 모의, 지하실에 빙초산이 없고 최씨가 빙초산을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씨가 이를 먹고 음독자살을 한 것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부서 형사인 신씨는 최씨가 죽은 5일뒤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에 독극물 성분여부 관련 감정을 의뢰

해, 10일후 '일반독극물(6개 항목) 음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회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빙초산을 마시고 자살했다고 검찰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씨는 최씨의 팔, 손 등의 일부 멍자국이 있었고 얼굴 오른쪽 눈썹 옆 1개부분, 오른쪽 뺨부위 1개부분 등에 작은 상처가 있었는데도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경찰조치 및 의견에 "변사체에 외상이 전혀 없고 타살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보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지금까지의 검찰수사가 최씨 사망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최씨에 대한 학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인을 밝히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지체장애인인 최씨(당시 30세)는 지난해 5월 29일 대구시 남구 이천동 이씨집 지하실에서 사체로 발견됐으며 경찰은 사체옆에 놓여 있던 빙초산으로 추정되는 우유병과 유서처럼 보이는 편지글, 그리고 타살흔적이 없다는 점등을 들어 자살로 처리했으며, 최씨는 사망 하루만에 이씨에 의해 화장됐다.

그러나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우유병에 담긴 물질이 빙초산이 아니라고 판정했으며 △유서는 최씨 사망 4개월여전인 1월 6일자로 쓰여진 것으로 정신지체장애인이 사망 4개월여전부터 죽음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고 △사망하루전까지 최씨가 심하게 구타당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는 점등을 들어 경찰이 주장한 자살근거가 모두 이유 없다며 타살의혹을 제기했다.

[이재윤기자] ljljly@yeongnam.com

2000년 5월 10일

속보=장애인 최경아씨 사망사건(영남일보 3월 15·20일자 31면 보도)과 관련,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과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이웃주민, 그리고 최씨와 가까운 인물들 사이에 최씨 사인(死因)을 둘러싸고 풀리지 않는 의혹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된 의혹은 5가지. △유서 문제 △빙초산 문제 △구타 등 확대문제 △수사과정상 축소 문제 △자살·타살 문제 등이다. 최근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낸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1일,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에도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들 의혹에 대한 사실적인 작업에 검·경찰의 재수사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대구지검은 3일 진정인 조사를 시작으로 최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 과연 유서인가

경찰이 최씨 사인을 자살이라고 판단한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사체 옆에 놓여있던 유서3장. 노트에 쓴 것을 찢어서 침대 위에 올려놓은 상태였다. 수년동안 자신과 함께 살던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다. 그러나 이 유서에 적힌 날짜가 의문이다. 사망(99년 5월 29일) 5개월전인 1월 6일자이다. IQ 60 수준의 정신지체장애인인 최씨가 죽기 5개월전에 벌써 유서를 써놓고 죽음을 준비했을까. 또 이 유서 3장이 모두 같은 내용인 것도 의문. 결국 유서가 아니고 일기장이든지, 누군가 글을 가르쳐 주면서 쓴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서가 아니라면 왜 유서로 오인되도록 하필 '그 시각 그 곳에' 놓여 있었을까. 찢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일기장은 어디에 있을까. 사건현장에서 경찰은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지금 이 일기장에 대해 최씨 동거인은 경찰이, 경찰은 동거인이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기장이 실종된 것이다.

2) 빙초산이라고 누가 먼저 얘기했나

경찰과 검안의사는 최씨 사인을 '빙초산을 먹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 빙초산을 담았던 플라스틱 병이 사체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건 1주일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빙초산 등 독극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빙초산이라고 누가 어떻게 판단했나. 경찰은 당시 방안에는 시큼한 냄새가 났고 검안의사가 빙초산이라고 얘기해 알았다고 했지만, 검안의사는 당시 경찰이 먼저 얘기했다고 말했다.

3) 구타 등 확대가 있었나

장애인단체의 진정서에 따르면 최씨는 사망 전날 심하게 폭행 당했는지 얼굴이 붓고 전신에 상처투성이가 된 채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다. 또 이웃 주민들도 최씨가 평소 구타와 확대를 당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자들은 확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타 등 확대여부는 자살이든 타살이든 최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4) 수사과정 축소 있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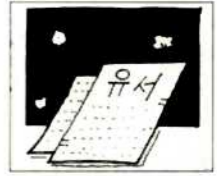
부검은 왜 실시되지 않았나, 독극물 검사까지 의뢰하면서 왜 자살로 판단, 부검도 하지 않고 사인을 밝힐 수 있는 사체를 사건 바로 다음날 급하게 화장했나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자살임이 명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체사진을 본 고려대 황적순 교수(법의학과)는 부검을 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사기관 관련 단체의 주요 직책을 갖고 있다는 점도 수사의 축소소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이다.

5) 자살인가 타살인가

최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다. 경찰이 자살이라고 판단한 근거(빙초산·유서·사체에 타살흔적 없음)가 모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타살이라면 범인을 밝혀야 하고, 자살이라면 최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재윤 기자] ljyljy@yeongnam.com

2000년 4월 6일



국과수 감정서 독극물 발견 못해 경찰-검안팀 "먼저 얘기안했다"



사망전날도 얼굴 붓고 전신 상처 이웃주민 "평소 구타당했다" 주장



왜 사체부검 않고 서둘러 화장했나? 혐의자 수사기관 관련단체 주요직책



빙초산·유서·타살흔적 없음 등 경찰 자살판단근거 의문투성이



동거인·이웃주민 등 넷 검찰조사

「장애인 의문사」사건

속보=장애인 최경아씨 사망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김동섭)는 24일 최씨의 동거인이었던 이모씨와 이씨의 수양딸 장모씨, 그리고 이웃주민 2명 등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의 진정내용에

장애인 의문사 수사 네티즌 항의 폭주 경찰 해명자료 올려

속보=영남일보가 제기해온 장애인 최경아씨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비난과 항의성 글이 폭주하자 경찰이 자체 홈페이지에 수사 과정 등에 대한 해명 글을 올렸다.

최근 대구지방경찰청과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지난 3월 최씨 사망사건에 대한 의혹을 영남일보와 이어서 KBS '추적 60분'이 제기한 이후 재수사를 촉구하는 네티즌들의 비난 글이 수십건 올랐고, 조회 건수는 수천회에 이르고 있다.

우선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생각해도 수사 상에 의문이 많은데 어찌 전문가들이 그리 어설픈 정의를 내릴 수 있나. 혹시! 격분을 금치 못하겠다(지관섭), "재수사하면 뭐해, 무혐의로 풀려날 것이 확실시되는데..."(쓴소리), "한 인간의 인생과 죽음이 타인에 의해 조작되고 바뀔 수 있는 것인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김대

대해 대질신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벌였으며 이씨에 대해서는 25일 한차례 더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 인권탄압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오는 5월 3일 대구 지방검찰청사 인근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대구사무소 앞에서 벌이기로 하고 24일 집회신고를 했다.

[이재운 기자] ljyljy@yeongnam.com

진)등 초기 수사에 대한 항의와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이 같은 무서운 인권유린 현상이 덮일 때 우리 국민들은 서서히 포기하게 될 것"(허용) 등 최씨의 죽음에 분노와 슬픔을 함께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과정과 네티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경찰은 △얼굴은 하얗고 팔 및 손등에 멍자국은 있었으나 직접 사인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고 △부위가 붉은 색을 띤 것은 사망한지 12시간이 경과해 시반이 형성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며 △우유병의 내용물을 검안의사에게 확인한바 빙초산이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또 사체부검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건 당일 검찰로 관련서류를 송부, 다음날 '사체를 검시해 사인 규명한 후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하라'는 지휘를 받아 사체를 수양모에게 인계했다"면서 "수양모가 최씨는 고아로 유족이 없다며 자신이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말해 사체를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재운 기자] ljyljy@yeongnam.com

2000년 4월 25일

● 시청자 의견

어이가 없군요

정말 어이가 없군요... 누가봐도 뻔한 뒷얘기가 감추어졌을 사실이 그 누군가에 의해 감추어지곤 있다... 최경아 씨가 너무 가엽군요... 재력과 권력이 있으면 한 사람의 죽음마저 드러마 각본처럼 창작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에 분노를 넘어 냉소의 웃음으로 외면하고 싶네요... 부디 추적 60분팀에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 등록자 : 김상규

장애인 최경아의 이야기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도록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도의적이나... 도덕적 책임이니 하는 피상적 표현보다 철저한 수사로 현실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당연한 이야기 겹치지만 명확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의 마지막 멘트처럼 어떻게 그토록 구조적으로 모든게 묻힐 수 있는 건지 사건에 대한 경과,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절대 묻혀지지 않고 규명되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 등록자 : 신도익

사진 자체로도 살인이다

3월 30일 방송된 최경아 취재를 보고 난 군병원 수송부 있었던 경험으로 이것을 살인이라 생각한다.

왜?

- 1번 약먹고 죽사 아니다음 저렇게 편히 누워 있지 못한다.
- 2번 죽사가 아니기 때문에 속이 괴로워 손톱이 남아 있지 못하다.
- 3번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를 반영한다.

이 사건은 사고를 저지른 사람과 경찰, 의사가 함께 공범이다.

난 내 목숨을 걸고 이 사건에 대해 한정의 사진 만으로도 살인이랄까 말한다.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짐승보다 못한 사람... 이모 씨와 의사 양 씨 그리고 담당형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 보라. 자신이 죽었던 아니던 죽음을 한번더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의사와 경찰에게 묻고 싶다. 정말 양심에 가책이 없는지... 정말... 없는지... 만약 없다면 난 이세상에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경찰과 의사를 두고 사는 슬픈 사람이 될 것 같다.

진정 검찰에 확실한 발표를 바라며 이 글을 남겨 본다.

- 등록자 : 여병욱

최경아는 타살일 것이다.

사람은 아주 심하게 굴게 되면 구토를 하게 된다. 음식을 해 본 사람은 누구나 안다. 그리고 글씨 또한 그렇다. 왼손으로 쓰면 누구나 그런 글씨가 나온다. 장애인이라고 글씨를 못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IQ 60의 장애인이 3장을 똑같이 쓸 수는 없을 것이다. 누구든지 2~3일이면 자기가 계획했던 일을 맞게 된다.

기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소 쓰던 손이 아닌 다른 손으로 글을 써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최경아의 사건은 꼭 밝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 등록자 : 김민규

경아 씨의 명복을 빌며...

우선 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옵니다. 엄연히 법치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이렇듯한 절차도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정황파악도 없이 수사를 종결짓고 형사라는 작자와 의사라는 작자는 황당한 소리만 지껄이는 상황... 하다못해 동태 개가 없어졌어도 이렇게는 수사를 안했을 겁니다. 장애인이 죄입니까?

장애인이란 죄로 짐승처럼 간해서 정신이상자인 이 씨란 인간에게 사육되었던 경아 씨의 억울함을 생각해서라도 추적 60분과 인권단체에서는 부디 그 이 씨의 파렴치한 행각에 대한 처벌과 수사형사 검사의사에 대한 처벌도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등록자 : EVRC001

하늘에서 억울해 할 경아

더이상 이런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 거짓과 위선! 아직도 부와 권력이라면 살인마저도 용납되는 사회란 말인가? 정말 의욕상실이다. 마지막으로 취재하신 기자님께 감사드리고 꼭 이 사건이 밝혀지고 또, 그 진상을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등록자 : WHYKJJ

경아의 죽음... 관련자 모두 소환하고 이모 여인은 사형해야 마땅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 이모 여인의 가식적인 울음에 소름이 끼칠정도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경아를 위해서라도 제작진께서 끝까지 이 사건을 취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변사람들도 어쩔 그렇게 무심할 수 있었는지요. 장애아가 그렇게 맞고 산다는걸 알면서도 그대로 묵인하여 두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해요.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추적60분에서 계속해서 이런 비리들을 밝혀주세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현실을 감지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신고할 수 있게 말이예요. 그리고 그 경찰들도 모두 소환하여 사전에 이모 여인과 짜고 수사를 종결시킨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이모 여인 이라는 짐승만도 못한것은 경아가 당했던 멧새 배 멧백배의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 중증 장애아를 10년이나 괴롭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 등록자 : NOLBANK

● 성명서

과연 이 땅에 장애인의 인권은 존재하는가?

전국 450만 장애인은 작년 5월 숨진 대구의 정신지체장애인 최경아의 죽음을 대하면서 슬픔에 앞서 장애인의 인권이 유린되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수년간 비인간적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한 장애인을 죽게 하고도 권력과 재력의 힘으로 이를 자살로 은폐하려 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더욱이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그 누구보다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인권옹호를 위해 매진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죄과를 은폐하려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그리고 전국 450만 장애인은 '모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중되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 앞에 장애인만은 예외되며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이에 전국 450만 장애인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장애인의 인권이 유린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의 주모자인 이옥례를 비롯 범죄사실을 축소 은폐하는데 가담한 관계자를 끝까지 색출해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검찰은 최경아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사인규명은 물론 이옥례가 관변단체의 간부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난 수년간 저질러 온 학대와 반인륜적 행위를 철저히 규명해 그 죄과를 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옥례와 함께 최경아의 죽음을 축소 은폐하는데 가담한 담당경찰, 검안의사, 구의원 그리고 이들을 보호해준 검찰 및 경찰 관계자를 끝까지 찾아내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최경아씨 외에 지난 수년간 이옥례에 의해 학대를 받아오다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제2의 최경아'에 대한 진상도 명백히 밝힐 것을 주장한다.

넷째, 정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다시는 이 땅에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도 사회의 한 곳에서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르는 자들에 의해 신음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정신지체장애인 최경아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전국 450만 장애인은 다시는 이 땅에서 최경아와 같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일이 재발할 때에는 침묵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다시 한번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앞세워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파렴치한 자들이 이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검찰을 비롯한 관계당국은 최경아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전국의 450만 장애인들의 이름으로 총결집해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0년 5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호소문

시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글!

천사와도 같은 순진무구한 한 생명의 죽음앞에서

우리는 분노하여 외칩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의 딸 최경아씨의 영혼을 달래어

죽은 영혼이나마 천국의 나라에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을 채 꽃피우지 못하고 어이없이 세상을 하직하게 만든 이 사회가 참으로 원망스럽고, 부끄럽고,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힘없이 죽은 우리의 딸 최경아의 죽음은 온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에 호소문을 올립니다.


내용 : 1. 우리는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1999년 5월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소재 한 가정집 지하실에서 시체로 발견된 정신지체장애인 최경아씨(사망당시 30세) 의문사(死)에 대해 "장애인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많은 의문점이 발견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현재 대구지방검찰청등에 재 수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 또한 한국방송공사 KBS 2TV 추적60분 프로그램에서도 관심을 갖고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취재, 오는 2000. 5. 14(일)오후 9시 20분 방영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각 사회 복지기관단체 관계자와 회원, 시민 여러분께서는 KBS 2TV 추적60분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고(故) 최경아씨 의문사(死)에 대한 진실이 하루속히 밝혀져 고인(故人)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0. 3. 30 한국방송공사 KBS 2TV 추적60분 프로그램에서 제1차로 방영된 자료는 인터넷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 <http://www.kbs.co.kr>)

제 46호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① 명 칭	장애인 인권 탄압 및 진상규명 촉구대회	
② 개최 일시	2000. 5. 3. 14:00-17:00 (3시간)	
③ 개최장소 (시위 행진의 진로)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대구사무소앞 인도	
④ 주최자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1810-3
	성명(단체명)	(사)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노세중)
⑤ 접수 일시	2000. 4. 24. 16:30	
⑥ 참고 사항	신고인원 800명	
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2000년 4월 24일		
대구수성경찰서장 		
(사)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세중 사무국장 귀하		



“억울한 죽음 진상 밝히라”

「최경아씨 사망」검찰 철저 재수사 촉구
장애인단체회원등 300명 “꽃상여 시위”

속보=장애인 최경아씨 사망사건과 관련, 장애인단체회원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300여명은 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대구지부 사무실 앞에서 '장애인 인권탄압 및 진상규명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장에서 참석자들은 꽃상여와 만장 등을 앞세우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최씨를 확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의 모든 사회단체 직책을 박탈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윤수동 회장은 “이번 사건을 용기있게 제보해준 이웃 주민 등에 대해 이씨와 그 측근들이 협박과 공갈을 일삼고 있는 최씨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서명을 받는 등 사건을 다시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환경운동연합 정학 공동대표는 “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이 반드시 규명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행사 후 대구시 남구 이천동의 최씨가 살던 집으로 옮겨 진훈국과 영가오귀굿을 벌였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진입을 둘러싸고 2시간여간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측은 이날 “의문사한 최씨 외에 확대와 구타를 당한 ‘제2의 최경아’가 존재했고, 최씨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새로운 사실을 제기, 관심을 모았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재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심동섭)는 진정인인 윤수동 지체장애인협회장과 이웃주민 그리고, 최씨의 동거인이었던 이모씨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데 이어, 2일 최씨 사체를 검안한 의사 양모씨를 불러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재윤 기자] ljljy@yeongnam.com

2000년 5월 4일

별지 제3호 서식		옥외집회 (시위) 신고서 접수증
① 명 칭	장애인 최경아 의문사 죽은 영가 오귀굿(한글이굿)	
② 개최 일시	2000. 5. 3(수) 14:30-17:30 (3시간)	
③ 개최장소 (시위 행진의 진로)	집회 : 대구시 남구 이천동 491-29 최경아집 앞노상 행진 : 없음	
④ 주최자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1810-3 (☎ 954-0170)
	성명(단체명)	노세중 (사)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⑤ 접수 일시	2000. 5. 1. 11:20	
⑥ 참고 사항	준비물 - 음향차량1대 - 현수막 5개 “장애인 최경아 살인범 지수하라” - 피켓 10개	
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2000. 5. 1		
남부경찰서장 		
(사)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노세중 귀하		

“孫 검사님 힘내세요”

장애인 최경아 씨 의문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0일,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최씨의 동거인과 당시 수사경찰관, 구의원 등 3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5월 대구시 남구 이천동의 한 가정집 지하실에서 시체로 발견된 '최씨 사망사건'을 재수사해 달라고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가 검찰에 진정서를 낸지 40여일만이다. 지난 2월 24일 장애인단체들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만 해도 '재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시간만 끌다가 결국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훨씬 많았다. 이유는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수사기관 안팎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관련자들이 경찰관, 구의원에다 '대구지검 범죄예방협의회 대구·경북지역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 '대구 남부서 선진질서위원회 회장' 등등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이유에서다.

12일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는 최근 새로 제기된 의혹들을 모아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장애인협회는 탄원서 첫머리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온 검찰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고마워했다. 장애인단체의 한

회원이 이 문구의 삽입을 제의했는데 대부분 흔쾌히 동의했다는 후문이다. '예상과는 다른, 기대밖의' 중간수사 결과로 장애인단체들은 검찰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재수사기간동안 한차례이상 검찰조사를 받은 제보·증언자,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의 수사담당 손순혁 검사에 대한 '신뢰'는 의외였다. 수사기관이 관련돼 있고 검찰과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된 이 같은 성격의 서건수사에 대해서는 담당검사를 믿지 못하고 고통, 왜곡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자살과 타살여부를 밝혀야하고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이 있는 수사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더 남아있다.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노세중 국장은 "탄원서에 검찰에 대해 감사의 문구를 삽입한 것은 '손 검사님, 끝까지 힘내세요'라는 장애인들의 갈망을 담고있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liyli@yeongnam.com

2000년 5월 13일



이재윤 기자 /사회부

장애인 최경아 씨 사망사건 새 의혹들

장애인 최경아씨 사망사건과 관련, 지난 10일 최씨 동거인 등 3명이 구속된 이후에도 이번 사건실체를 밝힐 수 있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거나 새로운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2~3명 상습구타 행방불명

■ 제2의 최경아 있었다.

14일 방영된 KBS 2TV '추적 60분'은 최씨의 이웃 주민들의 증언 등을 통해 "최씨 전에 최씨가 살았던 집에 또 다른 고아 또는 장애아가 2~3명 더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씨 동거인이었던 이모씨(68·구속)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 등 학대를 당한 후 탈출했거나 행방불명됐다는 것. 이웃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20세정도의 한 여자는 이씨 집에 10년 정도 살다가 1991년쯤 갑자기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적 60분'은 '덕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또 다른 경아' 박모씨(27)를 찾아냈다. 지금은 결혼해 두 딸의 어머니인 박씨는 "10여년전 2~3년 이씨집에 있었다"며 "망치, 연탄집게, 몽둥이 등으로 상습적인 구타를 당했으며, 이를 견디다 못해 수차례 도망을 갔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그래서 음독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 같은 학대를 보다못한 이씨 친척의 도움으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로 일반 가정집에 보내

■ 의혹투성이 영남보육원

죽은 최경아씨와 그전 이씨 집에 있었던 '덕이' 모두 구미시 장천동 영남보육원에서 왔다. '덕이'였던 박씨는 "10여년전 여름 어느날 오후 보육원장인

천모씨가 자기차에 태우고 담요를 덮어씌웠다. 도착해보니 대구시 남구 이천동의 이씨집이었다"고 술회했다. 최경아씨 역시 이곳 영남보육원에 살다가 이씨집으로 옮겨왔다.

사회복지관계자들은 이곳 원생들이 '강제로' 일반 가정 등 다른 곳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덕이'에 대한 기록에도 도망을 의미하는 '탈원'이라고 적혀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80~90년 10년사이 탈원자 수는 30여명. 이들이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경아'로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 뚜껑은 어떻게 닫았나”

■ 다시 제기되는 타살의혹

강력부 검사출신인 임철 변호사는 "사건당시 사체옆에 있던(병초산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추정된) 우유병의 뚜껑은 닫혀 있었다. 부식성이 강한 독극물을 마신 사람이 죽으면서 병 뚜껑을 닫을 여유가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극심한 구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박씨(덕이)는 최경아씨의 죽음에 대해 "그렇게 때리고 굶겼는데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도 계속 있었으면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검 심동섭 형사4부장검사는 "이 사건이 은폐된 채 내버려진 이유에 대해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liyli@yeongnam.com

2000년 5월 15일

변사사건 검안 “허술”

대부분 법의학 비전공의사가 맡아 신뢰 떨어져

초동수사때 死因포착 결정적
찾은 오판으로 의문사 量産

법의학 전문의 참여 시급

사망사건 발생시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 사망 원인을 찾아내는 검안의사 대부분이 법医学을 전공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변사사건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안의사가 공모, 타살을 자살로 위장하려다 이를 밝혀내기가 어려워 정확한 사망원인을 가리기 위해서는 법医学을 전공한 전문가가 초동수사부터 수사에 참가하는 법의학관제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 파출소에서 작성하는 변사사건 발생보고서는 법医学을 전공하지 않은 검안의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검안의의 경우 건당 보수가 2만~3만원 선으로 턱없이 낮은데다 발생빈도가 잦은 변사사건 특성상 의사가 귀찮아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 사건해결의 결정적인 단서가 포함된 최초현장을 지나치는 수가 많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파출소직원이나 사건담당 형사 가운데 일부는 평소 범인검거에 대한 부담을 느낀 나머지, 의상에 타살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면 자살건으로 처리하려는 심리도 작용, 의문사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사망사건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도 법医学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비법의학전공자인 검안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만 의존, 사건지휘를 하는 것도 의문사의혹을 부풀리는 데 한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경찰이 타살을 가장한 자살사건의 변사체를 검안의사와 공모해 자살로 위장한 변사발생보고서를 작성 보고해도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전체 변사사건의 10% 정도만 발견현장에 나가보는 검사들의 눈을 속이기란 ‘식은 죽 먹기’라고 일선경찰관계자들은 털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장애인 최경아 씨(당시 30세)가 갖은 화대를 받은 끝에 의문사하자 최씨의 동거인인 이모씨(68·구속)는 자신의 사위이며 12년 가량 대구남부서 촉탁검안의를 해온 양모씨(불구속입건)에게 허위 사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게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이씨와 구속된 수사형사, 구의회 의원 등은 최씨의 사체를 서둘러 화장했다.

지난해 4월 30일 칠곡군 약목면에서는 7년전부터 치매를 앓아오던 60대 아버지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뒤 지병으로 숨졌다고 가족들에게 알린 다음 매장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김모씨(42세)가 한달 뒤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지역 촉탁의의 검안보고서에 따라 단순변사로 처리했다. 김씨가 자수한 다음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체에서 나온 가검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씨가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하는 독극물과 일치함에 따라 김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의 부검을 맡았던 경북의대 법의학고실 채종민 교수는 “법医学을 전공하지 않은 검안의의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소견에 따라 자살이나 타살이나를 가리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약목에서 발생한 존속살인의 경우에

서도 사체를 화장했다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다”면서 “사체처리도 까다롭게 하는게 의문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 심동섭 부장검사는 “최경아씨 의문사의 경우 검안의와 경찰이 허위로 작성한 변사발생보고서를 담당검

사가 믿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법의학전문학사가 초동수사 때부터 관여하는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용택 기자] ytjang@yeongnam.com

2000년 5월 17일

외국의 법의학관제도

몇 년전 TV에서 ‘형사 퀴즈’라는 외화시리즈를 방영한 적이 있다.

살인사건현장을 누비며 형사콜롬보 뺨치는 활약을 보여준 퀴즈는 분명 의사였다. 사실 의사이자 형사인 셉. 국내에는 이런 직종이 없어 형사로 번역하기도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법의학관(Medical Examiner).

미국에서 발달한 법의학관 제도는 변사사건의 1차 담당자를 의사인 법의학관으로 한다. 법의학관 사무실은 하루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변사신고를 받는다. 법의학전문학 또는 병리학전문학을 임명하며 검시를 담당하는 제도로 수사권까지 갖고 있으며 부검도 한다. 수석법의학관은 법의학 또는 병리학전문학 가운데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법의학관 보조는 검시조사관(Medical Examiner Investigator)이 맡는다. 수사관이나 간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 1년 가량의 법의학 훈련을 거쳐 임명된다. 미국에서는 21개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법의학관제도는 의과대학의 법의학고실을 중심으로 발달,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변사체의 감정이나 법의학적인 증거물의 감정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시관(coroner)제도는 검시관이 모든 변사체의 검시 및 죽음과 관계된 재산의 처리 등에 관한 권한도 행사하고 있다. 영국은 100만명의 도시를 기준으로 의과대학교수 6명이 도시의 부검을 전담한다. 일본은 경시청산하 각 기관에 법의학관을 두고 있어 각 의과대학의 법의학고실

미국 24시간 근무...수사권도 가져
유럽 의대 법의학 교실 중심 발달
일본·유럽·미국식 절충...유기적 운영

개설 의무화로 유럽식과 미국식을 절충한 유기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법의학관 몫을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검사든 경찰이든 시체를 살피는 일은 의사에게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법의학지식을 갖춘 의사는 거의 없다.

법医学을 전공한 의사는 국과수와 고려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등 5개 대학 법의학고실을 통틀어 20여명 안팎이다. 법医学을 전공하려는 학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정의대 교수 외에는 취직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영국은 인구 100만명 도시에서 3천건의 부검이 이뤄지는 데 반해 인구 250만명인 대구시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300건 남짓 부검이 실시된 적은 의문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가 최근 전국지검을 대상으로 한명의 공중보건의를 검안의로 배치, 변사사건 초동수사에서부터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법医学을 전공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용택 기자] ytjang@yeongnam.com

2000년 5월 17일

인권단체간부 장애인 폭행치사 의혹제기

검안의사 '인권간부의 사위' 로 밝혀져

유서는 4개월 전에 쓰여진 일기로 드러나

인권운동단체 고위간부가 장애인을 폭행,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검안의사가 인권단체 간부의 사위였음이 추가로 밝혀졌다.

장애인 최씨 사망사건 당시 현장에서 검안을 했던 이 의사는 오래전부터 남부경찰서 등 대구 주요 경찰서의 검안의로 활동해오던 외과 개업의였다.

검안의사의 소견은 당시 사건을 자살로 종결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초산을 먹고 죽었다고 했고 외상이나 외부침입 흔적이 없어서 자살로 단정지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

안의 ○씨는 "사체주변에 있던 병에서 초산 냄새가 나고 외상이 없고 유서가 있는 점을 봐서 자살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자살의 근거로 여겨졌던 유서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체 옆에 있던 최씨의 '유서'는 최씨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쓴 것이 아니라 이보다 4개월여 앞선 1999년 1월에 쓴 일기 형식의 글이라는 것. 이것은 최씨 일기장의 일부를 찢은 것으로 왜 하필 최씨가 4개월 여전에 쓴 일기로 유서를 대신했는지에 대해서 장애인단체 등이 강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인권단체간부 장애인 폭행치사 의혹제기 ③

"억울한 죽음 2명 더 있다" 주민 주장

최경아 씨 앞 동거장애인들 행방 묘연

인권운동단체 고위간부가 장애인을 학대·폭행,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앞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더 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5월 대구시 남구 이천동 주택 지하에서 사체로 발견된 장애인 최경아씨 의문사가 경찰조사와 달리 '자살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면서 신빙성을 얻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정신지체장애인 최씨가 인권단

체인부 ○씨와 함께 생활하며 시중을 들기 시작한 1991년 이전에도 최소한 2명의 장애인이 ○씨와 함께 살았는데 행방이 모두 묘연하다는 것. 이웃주민들이 이들 모두 ○씨로부터 구타와 학대를 받다 어느날 모습을 감춘 뒤 곧 새로운 장애인이 ○씨와 생활을 같이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정확히 기억하는 인물은 최경아씨 이전의 또 다른 2명의 '경아'다. 실제로 이 일대에는 첫 번째 경아씨도 최씨처럼 10여년간 ○씨 집에서 생활

하다 죽어 화장(火葬)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며 두 번째 경아씨는 1년 정도 생활하다 구박과 구타를 못 이겨 집을 나갔다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다.

경아 두명은 어디로 갔나

주민들이 정확히 기억하는 인물은 최경아씨 이전의 또 다른 2명의 '경아'다. 공교롭게도 ○씨 집에는 총 3명의 경아씨(비슷한 또래, 성씨 미상)가 거쳐갔다는 것. 즉 세 번째 경아인 최씨가 ○씨집에 오기 전에 다른 경아(두번째)가 있었으며 그 이전에 또 다른 경아(첫번째)가 ○씨의 시중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모두 세 번째 경아 최씨처럼 구타와 학대를 당했으며 행적이 묘연해 의문.

실제로 이 일대에는 첫 번째 경아가 10여년간 ○씨집에서 생활하다 죽어 화장(火葬)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며 두 번째 경아는 1년정도 생활하다 구박과 구타를 못 이겨 집을 나갔다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다.

인근시장에서 줄곧 상업에 종사해온 주민 ㄴ씨와 ㄱ씨는 "첫 번째 경아는 얼굴이 퉁퉁하고 두 번째 경아는 키가 크고 고집이 션다"고 말하고 "둘다 지능이 낮아 보였다"고 회상했다.

인근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씨가 시장에 나올때면 항상 이들을 대동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경아 모두 ○씨로부터 구타와 학대를 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장애인도 구타당해

시장 상인 ㄱ씨는 "○씨가 경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붙이가 달린 지갑으로 머리를 때리는 걸 봤다"며 "경아는 내가 도망가라고 해도 못가고 ○씨에게 그대로 일러바칠 정도로 저능아였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 상인 ㄴ씨는 "○씨가 고아와 장애인들을 거둬들여 돌본다고 말하곤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씨 집 경아는 모두 불쌍했는데 어디 갔는지 행적조차 알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씨는 장애인들을 보육원 등의 시설에서 데려와 같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세 번째 경아 최씨의 경우처럼 이들의 행방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와 관련, ○씨와 함께 활동했던 ㄴ씨는 "앞의 두 경아는 시집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 번째 경아 최씨 사망당시에도 ○씨는 주위에 사망사실을 숨긴 채 (인천으로) 시집갔다고 알려진 것으로 드러나 나머지 2명의 장애인 행방에 대해서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는 것.

'장애인 아니다' 확인 '강요'

이와 관련, ○씨는 의혹을 풀기 보다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있어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주의 사람들이 음해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던 ○씨의 태도가 최씨 의문사 보도 이후 돌연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씨는 장애인을 학대 구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주변 세입자들을 상대로 사망한 최씨가 장애인이었다는 요지의 '확인서'를 강요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에 의하면 ○씨가 기초의원 ㄱ씨와 함께 다니며 자신의 소유 시장 점포 세입자들에게 '확인서'에 사인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 (ㄱ의원은 최씨의 사망신고와 화장철차를 밟기도 했다.)

시장 상인 ㄱ씨는 "○씨가 인권 단체, 검찰청, 경찰서 등의 각종 민간인단체에 몸담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은 물론 시장 세입자들에게 계약서 조차 작성해 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약자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3명의 장애인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면 기자]

최경아 씨 사건 놓고 시민단체 성명 발표 실종된 또다른 경아 등 불법거래 의혹도 주장

대구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정신지체인 최경아 씨(당시 31세) 의문사 사건과 관련,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대구지방검찰청의 재수사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최경아 씨의 정확한 사인규명은 물론 최 씨의 사인을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 수사한 관련자 전원의 처벌"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최 씨와 법적으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육례 씨가 관변단체의 간부라는 자신의 지위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천 씨가 지난 93년 원생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 재판까지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최 씨 사망의 원인제공자인 천 씨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한 정신지체장애인의 죽음이 헛된 죽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검찰의 신속한 수사진행과 사인규명 및 관련자 사법처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체장애인협회(회장 윤수동)는 "최 씨가 사망한 날 밤 시신과 이 씨집 지하방을 함께 치우

“한 정신지체인의 죽음이 헛되지 끝나지 않도록 관련자 사법처리 끝까지 지켜볼 것”

를 이용, 최 씨를 불법적으로 자신의 집에 세입자로 상주시키며 갖은 학대와 폭행을 행사해 최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행위 ▲최 씨의 몸에 남아있는 학대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이 씨의 사위인 검안의 양문석, 당시 남부서 교통과장 신아무개 씨, 남구의원 광무순 씨 등과 모의해 빙초산, 유서 등의 거짓 증거로 사인을 은폐한 점 ▲최 씨가 죽은 다음날 일요일 아침 수사감사지휘서를 작성해 쥐 하루만에 화장처리하도록 한 검찰 및 경찰 관계자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처벌 ▲최 씨 외에 이 씨 집에 감금돼 학대를 받아오다 실종된 또 다른 경아 ▲이 씨 집에 최 씨 외에 여러 명의 아동을 불법적으로 보낸 영남보육원 전원장 천특훈 씨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불법거래 의혹 및 불법 유기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주장했다.

고 사건처리를 논의하는 등 이 씨에게 유리한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진술내용을 직접 불러 받아쓰게 한 당시 남부서 교통과장 신아무개 씨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지장협은 "이 씨가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사례금을 전달했고, 사라진 최 씨의 일기장도 경찰간부가 가져갔다"고 주장해 이 씨가 경찰협력단체의 간부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 사건을 은폐하는데 경찰간부들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을 남겼다.

[김명희 기자]

2000년 5월 19일

진정서

장애인의 달 4월을 맞이하면서 근간 보도된 장애인 타살인가 자살인가를 다룬 기사를 접한 사람은 누구나 아픈 마음과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최경아 양과 같은 경우가 발행해서는 안된다고 사려되어 감히 진정합니다.

위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현재에도

- 20대의 한 처녀(김○○)가 영남원 출신이었다는 운영이사장님의 명분하에 구미시 장천면 하장리 폐원된 영남보육원 옆 과거 원장이자, 폐원시 운영이사장 이었던 천특훈 씨 개인 사택에 김○○를 외 부사회와 일절 단절 시키고 자정능력이 없는 김○○를 감금화시킨 상태에서 현대판 노예처럼 한사람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현재)
- 김○○ 양은 과거 영남보육원을 퇴원한 후 자활차원에서 구미있는 동국방직의 산업체학교에서 낮에는 일하고 야간등교 하면서 3년동안 정박아로서 할 수 있는 자활생활을 했으며 그동안 동국방직의 배려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적립했다고 함.
- 천특훈 씨는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사건으로 수차 기소되었으며, 근간에는 정신장애 아들은 물론 아동폭행으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있다.(지방신문과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실에 대한 포항아동 폭력 상담소의 조사가 됨.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최경아 양의 퇴원당시 원장이었으며, 그의혹이 거론 되었습니다.

이 사실로 보아 한 젊은 여자의 기본적 인권과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뜻있는 단체가 검토하여 보호해야된다고 사려됩니다.

첨부(참고) : 천특훈 씨의 인격으로 미루어 보아 조사 이전에 김○○ 양의 신변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2의 최경아 처럼 될 수도 있고 또한 증거인멸을 위하여 어떠한 상식에 벗어난일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며 기득권층으로 그의 배경과 경제적인 부로써 진정한을 다양한 통로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 단체의 진정인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와 언론 및 단체, 개인에게 신분노출을 시키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진정사건처분통지

진정사건처분통지

1. 귀하께서 우리청에 제출하신 진정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알려드립니다.
2. 사건번호 : 2000년 진정 260호
 주임검사 : 검사 손순혁
 처분일자 : 2000년 5월 31일
 처분요지 : 귀하가 제출한 진정은 피진정인 이육례(수양 모), 박무순(구 의원), 신창수(담당경찰관), 양문석(검안 의사)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어 허위검안서작성등으로 입건하여 2000. 5. 27. 피진정인 이육례, 신창수는 각 구속기소, 같은 박무순, 양문석은 불구속기소하였으며 수사전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여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2000. 5. 31.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손순혁

"기본을 바로 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법무부

우 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 전화 (02) 503-7053 / 전송 3480-3099
 검찰제2과 담당자 안창호

문서번호 검이 61070-1484

시행일자 2000. 6. 19 ()

수신 유수동 귀하

참조

제목 민원서류 서리결과 통지

국무조장실을 경유하여 우리부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류는 지체장애인 최경의 의문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망하는 내용인바, 피진정인 이육례에 대하여는 현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구속 수사중에 있으므로 관할검찰청에서 그 수사 및 공판에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으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법무부장관

매일신문

장애인의문사 증거인멸 모의

타살혐의 벗으려 서둘러 시신 화장
 동거인·구의원·경관 등 3명 구속영장

대구지검 형사4부 손순혁 검사는 10일 지난해 사망한 정신지체장애인 최경아(당시 29세)씨를 상습폭행하고 시신을 화장해 타살 여부 판단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최씨의 동거인 이모(69·대구시 남구 이천동)씨와 모 구의회의원 곽모(40)씨, 남부경찰서 신모(43)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씨의 사위인 검안 의사 양모씨를 입건했다.

이씨는 장애인 최씨를 지난 92년 양녀로 삼는다며 모 보육원에세 데려와 가정부로 부리면서 95년 11월 자신을 죽이려 음식에 독약을 탄다고 트집잡아 때리는 등 확대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5월 최씨가 숨지자 최씨의 운모에 상처가 있어 확대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괄씨 등과 공모, 빙초산을 마시

고 음독자살한 것으로 모의해 시신을 사망 하루만에 화장한 혐의다.

피의자 이씨를 알고 지내던 곽의원은 최씨가 숨지자 방안에 식초 냄새가 가득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고 동사무소 직원에게 화장 절차를 빨리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이씨와 함께 당직 검사를 방문해 사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경사는 이씨의 부탁을 박도 「외상이 없어 자살로 추정된다」고 수사보고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평소 최씨를 심하게 확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씨 죽음과의 직접적 관계는 현재 밝히지 못했다」면서 「타살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왕 기자] jwchoi@imaeil.com

2000년 5월 10일

영남일보

「장애인 최경아씨 의문死」
 관련자 징역 7~1년 구형

대구지검 확대·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장애인 최경아 씨(여·당시 30세) 의문사 사건과 관련, 최씨의 동거인이었던 이육례 피고인(68) 등 관련자 4명 모두에 대해 징역 1~7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제4형사부 손순혁 검사는 23일 오후 대구지법 21호 법정에서 박재형 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씨 의문사 사건 관련결심공판에서 이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 이 피고인의 사위이자 당시 검안의 양문석 피고인(52) 징역 2년, 사건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대구남부서 형사계 직원 신창수 피고인(43) 징역

1년 6월, 그리고 대구남구의회 의원인 곽무순 피고인(40)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이씨가 숨진 최씨를 지속적으로 때리고 학대해온 점이 목격자들의 진술과 최씨에 대한 각종 진단서 등 여러 정황증거를 통해 인정된다"라고 밝히고, "남부서 촉탁의사인 양씨 등 3명의 피고인은 이씨와 공모해 최씨가 빙초산을 마시고 자살했다는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하고 사망 하루만에 서둘러 화장하는 등 허위공무서 작성 등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인인 최씨를 1992년 구미 영남보육원에서 자신의 양녀로 삼겠다고 데려와 사실상 하녀처럼 부리면서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트집을 잡고 상습적으로 구타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장애인 최경아씨 의문사 사건은 지난해 5월 29일 대구시 남구 이천동 이 피고인 지하실 방에서 최씨가 사체로 발견된 사건. 사체 발견 당시 경찰은 사체 옆에 놓여있던 빙초산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우유병과 유서처럼 보이는 편지글 등을 근거로 "타살 흔적이 없다"며 부검조차 하지 않고 단순자살로 처리하고, 최씨의 사체는 사망 하루만에 피고인 이씨 등에 의해 화장됐다. 이에 대해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들이 최씨 사망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탄원, 재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이 피고인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6일 오전 대구지법 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장용택 기자] ytjang@yeongnam.com

2000년 10월 24일

영남일보

養母 이옥례 씨 징역 4년 선고

장애인 최경아씨 의문死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학윤)는 26일, 정신지체장애인 최경아 씨(사망·당시 30세)에게 가혹행위를 해 상해 및 허위검안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 씨의 양모 이옥례 피고인(70) 등에 대한 파기항소심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4년으로 선고했다. 또 이 피고인의 사위며 사건당시 부검의였던 양문석 피고인(53)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건현장에 함께 있었던 남구의회의원 곽무순 피고인(41)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최 씨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전 남부서 직원 신창수 피고인(41)에 대해서는 벌금

1천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92년 정신지체장애인 최 씨를 한 보육원에서 양녀로 삼겠다고 데려와 상습적으로 구타해 왔으며 최 씨는 99년 5월 29일 이 피고인의 지하실방에서 숨진 사체로 발견됐다. 이 피고인과 3명의 다른 피고인들은 사체옆에 빙초산이 담긴것으로 추정되는 우유병과 유서처럼 보이는 편지글 등을 근거로 '타살 흔적이 없다'며 부검조차 하지 않은채 단순자살로 처리하고 하루만에 서둘러 화장했다가 기소됐다.

[장용택 기자] ytjang@yeongnam.com

2000년 10월 26일

영남일보

「장애인 최경아 씨 의문死」 이옥례 씨 징역 6년 선고

대구지법, 나머지 관련자 3명은 1년형

장애인 단체의 꾸준한 진상규명 요구와 시민들의 관심속에 진행된 장애인 최경아씨(여·사망당시 30세) 의문사 사건관련 재판에서 최씨 동거인이었던 이옥례씨(69) 등 관련자 4명 모두에게 징역 6년에서 1년까지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재형 판사는 6일 열린 최경아씨 의문사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피고인에 대해 상해 및 허위검안서작성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대구 남부서 형사계직원 신창수 피고인(43)과 이 피고인의 사위로 당시 최씨 사체를 검안했던 양문석 피고인(52), 대구 남구의회 의원인 곽무순 피고인(40)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이 내려졌다.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씨와 곽씨는 항소하지 않으면 구속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당시 이 피고인의 집에는 빈방이 여러개가 있었지만 숨진 최씨가 어두운 지하실에 놓여 있었고 영양실조라고 추정 될 만큼 야윈 상태에서 팔뚝에 수많은 멍이 들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외부인이 침입한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살로 단정한 것은 옳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또 사체가 발견된 현장에 없었던 빙초산을 먹고 자살했다는 수사보고서와 사체검안서를 작성한 뒤 서둘러 사망 다음날 화장한 것은 사망 원인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지 않고는 불가능한데도 한사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인인 최씨를 1992년 구미 영남보육원에서 자신의 양녀로 삼겠다고 데려와 집안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 사실상 하녀처럼 부리면서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 트집을 잡고 학대하고 상습적으로 구타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장애인 최경아씨 의문사 사건은 지난해 5월 29일 대구시 남구 이천동 이 피고인 지하실 방에서 최씨가 숨진 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사체 발견 당시 경찰은 사체옆에 놓여있던 빙초산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우유병과 유서처럼 보이는 편지글 등을 근거로 이 피고인 등 4명이 "타살흔적이 없다"며 부검조차 하지 않고 단순자살로 처리하고 사망 하루만에 이 피고인 등에 의해 화장됐다. 이에 대해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들이 지난 3월 초 최씨 사망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탄원, 재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장용택 기자] ytjang@yeongnam.com

2000년 11월 7일

“억울한 죽음 밝혀 다행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대구시지체장애인협

대구시지체장애인 협회(회장 윤수동)는 6일, 장애인 최경아씨 의문사 사건관련인 4명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자신의 권리 한번 제대로 찾지 못하고 억울한 세월을 살다간 최씨의 모습은 이 사회를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장애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면서 자칫 미궁으로 빠져들었음에도 모를 이 사건을 파헤치고 법정증언, 사건조사에 협조해준 법원·검찰, 언론, 대구 봉덕시장 상인 등에게 감사

했다.

장애인협회는 또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선 차별과 편견의 차가운 벽에 갇혀 고통으로 신음하는 장애인들이 많다”면서 “우리 장애인들은 이 같은 차별과 핍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나갈 것이며, 최씨 의문사와 같은 만행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장애인복지신문

이옥례에 징역 7년 구형

반성 기미 전혀 없어

정신 지체장애인 최경아씨(당시 31세) 의문사 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이옥례(69) 피고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지난 23일 대구지법 21회 법정에서 박재형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대구지검 손수혁 검사는 이옥례 피고에 징역 7년, 남구의회 구의원 곽무순(40) 피고에 징역 1년, 초기수사를 담당한 남부서 형사 신창수(43) 피고에 징역 1년 6월, 이씨의 사위 이자 검안의 양문석(52) 피고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 검사는 논고에서 “이씨가 수사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면 울고 쓰러지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여러 단체의 직위를 이용해 고위간부와 맺은 관계를 내세우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 사건의 죄질이 더 나쁜 것은 증거조작 및 인멸 행위가 심했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종변론에서 이씨가 30여분이나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며 장애인 운운하자 방청석에 있던 지체장애인 안영기씨(43·남)가 “장애인 팔아먹지 마라”며 소리를 질러 즉결에 넘겨지는 등 소란이 일었다. 즉결재판에서 안씨는 20일 구류를 받았으나 장애인단체의 탄원으로 다음날 풀려났다.

이옥례 피고의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6일 열린다.

[대구=김명희 기자]

“장애인·이웃 노력 진실 드러나”

「최경아씨 의문사」선고 공판

“지난해 5월 29일, 8년 동안 어머니처럼 모시던 이옥례씨 집에서 잤은 학대로 하인처럼 종살이를 하다가 불기 없는 지하실 방에서 혼자 초라하게 서른의 짧은 생을 마감한 장애인 최경아씨는 추모와 애도의 눈물 한 방울은 물론, 가식과 탄성에 젖은 눈물조차 받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 한줌의 재로 변하여 강물에 뿌려졌습니다. 살아 생전에 그녀를 돌보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녀의 죽음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장애인 최씨 의문사 사건을 재판한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박재형 판사의 소회(所懷)처럼, 자칫 영원히 가려질 뻔 했던 최씨 사건의 진실 일부가 드러나게 된 것은 이웃주민들인 봉덕시장 상인들과 같은 처지의 대구지역 지체장애인들의 노력 덕택이었다.

지난 3월초 장애인들이 ‘장애인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결성,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구지검에 제출하고 영남일보가 최초로 특종보도(3월15일자 27면)하면서 이 사건은 세인의 관심을 끌게 됐다.

당시 최씨 사망사건을 수사한 대구남부경찰서는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특정독극물로 추정되는 약품을 담은 병과 구토 흔적, 외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살로 결론 내렸다. 당시 사체를 검안한 외과전문의인 양문석씨와 남부서 형사 신창수씨 등은 수사보고서와 사체검안서를 작성했고 최씨 동거인이었던 이씨 등이 사망 다음날 서둘러 화장했다.

당시 경찰이 올린 사체검안서를 보고 화장하도록 수사 지휘했던 대구지검도 형사 4부 손수혁 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 재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 5월 이

옥례씨 등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의지를 보였다.

6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대구지검 범죄예방위원회 부위원장, 남부서 선진질서추진위원장 등을 지낸 이씨 등은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호화 진용의 변호사를 선임, 무죄 입증에 발버둥쳤다.

그런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사체발견 당시 검안을 맡았던 자신의 사위 양씨와 남부서 직원, 그리고 남구 구의원인 곽무순씨 등과 짜고 허위로 검안서를 작성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영남일보 특종보도 세인의 관심 끌어

담당판사는 6일 선고공판에서 △당시 최씨는 영양실조라고 불린 큰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마른 데다 팔뚝에 수많은 멍이 들었으며 얼굴은 부어 있는 상태인데다 배변을 한 흔적이 있고 △경찰이 자살의 단서로 추정된 메모지는 죽기 5개월전인 지난해 1월에 작성됐으며 △자살하는 사람은 빙초산을 마실 경우 뚜껑을 닫을 수 없는 데도 뚜껑이 닫힌 점 △국과수의 감정결과 유류병에는 빙초산이 아닌 무색무취의 종류미사의 액체가 들어 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따라서 부검을 해야하는 데도 자살로 단정한 것은 이들이 사망원인을 알 수 없도록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체가 서둘러 화장됐기 때문에 최씨의 정확한 사인규명은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따라서 법원과 검찰은 최씨에 대한 가혹행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물을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행위는 통상 처벌이 가벼우나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사망원인 판명이 불가능했으며, 처벌 또한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위로해 줄 스님의 독경도, 신부님의 영결미사도,

목사님의 소천예배도 없이 사망 다음날 한줌의 재로 변해 강물에 뿌려진 최씨 영전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선고에 앞서 방청객들에게 전한 박 판사의 떨리는

소회의 말은 방청객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장용택 기자 ytjang@yeongnam.com

2000년 11월 7일

대구 내일신문

1년 반만에 햇빛 본 억울한 죽음

대구장애인단체 노력으로 폭행가담자 실형선고

지난해 5월 29일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정신지체장애자 사망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6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재형)은 “인간은 모두 똑같은 가치를 지닌 존재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씨에 대한 죽음을 밝히는 것이다”며 판결문을 읽었다. 이어 피고인에게 1~6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정신지체장애인이었던 최경아(사망당시 30세)씨는 대구시 남구 이천동 자신의 양어머니 집 지하실에서 온 몸에 피멍이 든 채로 숨졌다.(2000년 5월 3일 주간 내일신문 330호 '대구정신 지체 장애자 자살 의혹' 보도)

당시 경찰과 검안의사는 '독극물에 의한 사망(빙초산을 마시고 자살)'으로 결론짓고 집주인 이 모(70)씨는 서둘러 화장했다.

그러나 최씨의 사망원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다. 평소 양어머니인 이씨가 죽은 최씨를 자주 때렸다는 주변인들의 주장을 토대로 대구시 장애인 단체가 검찰에 재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최씨가 마셨다는 우유병에는 빙초산이 아

니라 물이 들어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씨의 사위인 당시 검안의사 양씨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검안의 양씨를 허위공문서작성·허위 검안서작성으로 기소했다.

당시 이씨는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대구경북지부 부위원장, 대구지검 범죄예방위원회 여성분과장, 대구남부경찰서 선진질서위원장, 대구 이천파출소 명예회장, 대구 읍내중학교 교화위원 등의 직책을 맡아 활동했다.

당시 이씨 집을 드나들었던 주민들은 “최씨가 난방도 안되는 지하실에서 10여년 동안 생활했고, 죽기 전날도 심한 매질을 당했으며 끼니를 밥먹듯이 해 심한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말했다.

최씨 공판에 대해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운수동 회장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최경아씨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호성기자] hsjeon@naeil.com

2000년 11월 8일

중앙일보

장애인 '억울한 죽음' 장애인들이 풀었다.

온 몸에 멍이 든 채 의문사 했으나 경찰조사에서 자살로 처리됐던 한 장애인이 장애인단체의 노력으로 1년 반만에 한을 풀었다.

지난 6일 오후 '최경아 사인 은폐의혹 사건' 선고 공판이 열린 대구지법 23호 법정.

“인간은 모두 똑같은 가치를 지닌 존재다. 살아 생전에 그녀를 돌보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죽음에 대한 책임을 밝히는 것이다.”

제1형사단독 박재형(朴載炯)판사가 침통하게, 간혹 울먹이기까지 하며 장문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1백여 좌석을 꽉 메운 방청객들은 숙연한 분위기였다.

“피고인 이○○ 징역 6년, 신○○ 징역 1년, 양○○ 징역 1년.”

재판부가 관련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순간 방청석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야-'하는 환성이 들리기도 했다. 최씨의 사인 규명을 위해 힘써온 대구지체장애인협회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정신지체장애인인 최경아(사망 당시 30세·여)씨가 대구시 남구 이천동 자신의 양어머니인 이씨(69) 집 지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해 5월 29일. 그리고 이튿날 최씨는 서둘러 화장 됐다. 신고를 받고 검안한 경찰과 의사가 “빙초산을 마시고 자살한 것으로 보임”이라는 견해로 사건을 처리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최씨 사망 사건은 8개월여만에 다시 사회 문제로 불거졌다. 평소에도 양어머니 이씨에게 구타 당하는 일이 잦았다는 등 최씨의 죽음에 의문이 많

다는 제보를 접수한 대구지체장애인 협회가 지난 3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

고 나선 것. 장애인들이 당시 사건을 처리한 대구 남부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하며 목소리를 높이자 4월 대구지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에서 최씨 몸에 수많은 멍자국이 있었다는 사실과 최씨가 마셨다는 독극물이 빙초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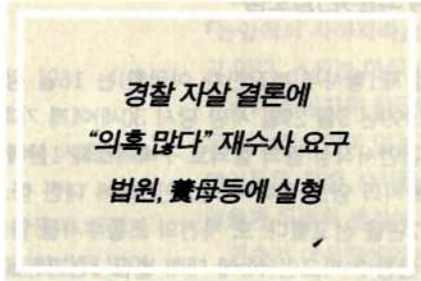
아니라 물이라는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분석결과를 확인하고 경찰에 자살로 결론을 내린 것을 추궁해 들어갔다.

그 결과 최씨의 죽음에 의문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 이씨와 검시조서를 작성한 경찰관 申씨(43)·이씨의 사위이자 검안의였던 梁씨(52)등을 허위공문서작성·허위검안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에게는 상해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지능지수 62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최씨를 92년 구미 보육원에서 데려다 집안 허드렛일을 시키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여덟 차례에 걸친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재판부는 혐의내용에 비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살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지만 피고인들이 시체를 서둘러 화장하는 바람에 사인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구=홍권삼 기자] honggs@joongang.co.kr

2000년 11월 8일



이옥례 씨 징역 2년 선고

초동수사 경관 벌금형...검안의사·구의원은 무죄

「최경아 씨 의문死」 항소심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국환)는 16일 정신지체장애인 최경아씨(1999년 5월 29일 사망 당시 30세)에게 가혹행위를 해 상해 및 허위검안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최씨의 양모 이옥례 피고인(7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남부경찰서 직원 신창수 피고인(44)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이피고인 사위로 당시 사체를 검안했던 의사인 양모씨(53)와 남구의회의원인 곽모씨(41)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숨진 최씨를 3회에 걸쳐 폭행을 했는데다 사망장소를 훼손해 사망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도록 한 점은 인정되나 고령인 점을 감안해 1심보다 형량은 낮했으며, 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초동수사를 담당하면서 국과수로 부터 빙초산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후에 작성한 3차수 사보고서에서 조차 우유병에 빙초산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이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나, 17년 동안 공무원으로 봉사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줄였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92년 정신지체장애인 최씨를 구미영남보육원에서 자신의 양녀로 삼겠다고 데려와 집안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 사실상 하녀처럼 부리면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 트집을 잡고 학대해 온 것은 물론, 상습적으로 구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뒤 99년 5월 29일 대구시 남구 이천동 이 피고인의 지하실 방에서 최씨가 숨진 사체로 발견되자, 이씨와 경찰은 사체 옆에 빙초산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우유병과 유사처럼 보이는 편지글 등을 근거로 ‘타살흔적이 없다’며 부검조차 하지 않은 채 단순자살로 처리하고 사망 하루만에 화장했다.

[장용택 기자] ytjang@yeongnam.com

2001년 2월 15일

여성장애인 성폭행·가정폭력 ‘신음’ “장애가 죄인가요” 인권유린 ‘체념’

대구지역만 1만 1천여명 직장 잃을까 상사 성추행 침묵 피해상담 전화 한달 30여건

여성장애인들이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다.

대구 지역 여성장애인 1만1천여명 가운데 대졸자는 10%미만이며 대부분은 낮은 교육과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성교육, 가족들의 냉대와 무관심으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문을 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전화 637-6057)에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상담전화가 하루 한두건, 석달 동안 100여건이나 들어왔다.

지난 2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미숙아를 낳은 지체장애인 ○(18)양은 수년전부터 동네 아저씨 5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충격에서 못 벗어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양의 딸은 성폭행 사실을 숨긴 채 입양기관에 맡겨졌다.

중증장애인 S(30)씨는 어릴때부터 가족들로부터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폭언과 함께 매를 맞으며 살고 있다. S씨는 아직까지 한글도 깨우치지 못했다.

결혼을 빙자해 접근한 「비장애인」남성에게 버림받은 여성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직장에 다니는 여성장애인들은 직장 상사들에게 성추행을 당해도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조차 못하고 있다.

권순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소장은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이 낮기 때문에 오랫동안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고, 피해 뒤 대처능력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교육과 인권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모현철 기자] mohc@imaeil.com

2001년 5월 21일

● 최경아 사건 항소파기심 결과

1심 결과

- 이옥례 징역6년
- 곽무순(구의원) 징역1년
- 양문석(검안의) 징역1년
- 신창수(담당형사) 징역1년

2심 결과

- 이옥례 징역2년
- 곽무순(구의원) 무죄
- 양문석(검안의) 무죄
- 신창수(담당형사) 벌금 1000만원

항소파기심 결과

- 이옥례 징역4년
- 곽무순(구의원)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 양문석(검안의)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신창수(담당형사) 벌금 1300만원

교도소 및 구치소 내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대구구치소 장애인 수용 현황	66
1.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2. 질의관련 현황	
3.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감실태 현황	
교정시설별 장애인 수감 현황	69
1. 전국 교정기관별 장애인 수행자 현황	
2. 대구교도소 장애인 수용자 및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	
3. 대구교도소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감실태 현황	
4. 대구교도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교도소 및 구치소 내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경과보고	73
갈길 먼 장애인 인권의 길	75
이원형 / 국회의원	
조사현황 자료	77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서)	
1. 대구구치소	
2. 대구교도소	
보도모음	79

1.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번호	시설명	설치장소 및 위치	개소	비고
1	점자블럭	민원대기실 실내·외, 청사입구		총 108m설치
2	음향유도기	민원대기실 현관입구	1대	
3	피난경보기	민원대기실 현관입구	2개소	
4	전용화장실	민원대기실	1개소	좌변기, 지지대, 세면대
5	전용화장실 출입문	민원대기실	1개소	
6	화장실 점자표시판	화장실 입구	1개	
7	접수대	민원접수대	1개소	
8	장애인주차장	주차장 내	2대분	
9	장애인주차장 안내간판		1개소	
10	주차금지 경고판	주차장 내	1개소	
11	전자전광판	민원대기실	1개소	청각 장애인용
12	전용접견호실	민원대기실	1개소	
13	경사로	민원대기실 입구	1개소	20m
14	휠체어, 목발	의무과	각 2대	병동1대 비치
15	전용E.V	중앙복도	4대	
16	장애인 거실	501동 6, 7실	2개소	

현재, 계단의 경우 인력으로 이송 * 민원실 편의시설

2. 질의관련 현황

- 구치소 내 전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일반 민원인을 위한 시설 포함, 서면제출)
○ 별첨 1 편의시설 현황 참조
- 현 시설 내 장애인 재소자 방의 현황(개수, 수용인원)은 어떻게 되는가?
또한 일반재소자 방에서 같이 수용된 장애인인 있는가?
○ 미결 장애인 수용거실 2개 거실에 22명이 수용
- 장애인 재소자 수용에 있어 재소자에 대해 장애별 별도관리를 하는가, 통합관리를 하는가?
○ 일반재소자와는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거실 부족 등 수용여건상 통합관리하고 있음.

4. 일반재소자 방과 비교하여 장애인 재소자들을 위한 별도 부대시설 현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시설건축시 장애인 거실이 별도 배려되지 아니하여 현재는 일반재소자와 동일한 시설내에 수용하고 있으나, 장애인거실 화장실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등 장애인 재소자들의 수용생활 중 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있음. (공사기간 : 7~8월)

5. 조사 또는 재판시 장애인 재소자 호송과정에 있어 임의적 별도조치가 아닌 규정된 지침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가?

○ 법무부훈령 제52호(75. 2. 28)로 제정된 계호근무준칙 제291호 및 보안일 23500-27258 (91. 12. 10, 출정재소자에 대한 시승시갑제도 개선지시) 호에 의거 장애인 호송시 계구사용에 탄력적으로 배려·대응하고 있음. (* 별첨 2·3 훈령 미 공문 참조)

6. 변호인접견, 면담, 면회과정 등 이에 대한 전담직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인 재소과정에 있어 전담교도관 이외에 별도의 담당직원(수화통역자, 사회복지사 등)이 있는가? 있으면 그 현황은 어떠하며 없다면 담당직원을 둘 계획은 없는가?

○ 변호인접견, 면담, 접견동행 등에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장애인 수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보조함.
○ 복지담당관으로 지정된 교무과장 등 6명의 직원이 복지담당위원으로 선정, 장애인 등 수용자 면담을 수시 실시하고 수용생활중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배려토록 함.
○ 수화 통역자는 필요시 통역가능한 우리소 교화위원이 내소하여 봉사하고 있으며, 현재 복지담당위원으로 선정된 2명의 직원을 수화학원에 등록시켜 수화기능을 습득케 하는 등 장애인 처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음.

7. 교도소 내 재소자프로그램(교육, 종교, 운동 등) 수행 시 일반재소자와 장애인 재소자에 대해 구별을 두는가?

○ 장애인 재소자의 자존심을 최대한 배려하고자 일반 재소자와는 운동 시간을 별도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음.

8. 장애인재소자의 인권확보와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차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 또한 이에 대한 장애인재소자 복지신장관련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며, 예산 외 제도적 애로사항은 없는가?

○ 먼저 금년 8월까지 장애인 수용거실 화장실의 개·보수 작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음. (* 별첨 4 참조)
○ 공사내용은 기존 목재출입문을 자바라 출입문으로 교체하고, 기 설치된 화변기·세면기를 장애인전용 스텐지시대 좌변기와 장애인 전용 대형세면기로 교체 할 예정임.
○ 현재 법무부에서는 장애인 재소자의 원활한 처우를 위해 장애인 전담 교도소의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입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망되는 바임.

3.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감실태 현황

장애인 시설현황

- 미결 장애인 수용거실 2개 거실에 22명의 장애인 수용. (1개 거실 11명 수용)
- 장애인수용자 관리적 측면에서는 지침상 일반재소자와 분리관리하고 있으나 거실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재소자가 많아질 경우에는 통합관리되고 있음.
- 시설건축시 장애인 거실이 별도로 배려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는 동일시설내에 수용하고 있으나, 장애인거실 화장실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로 장애인 수용환경을 개선하여 나갈 예정임. (7~8월 중 공사예정)
- **현 변호인 접견실이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 변호인들이 접견할 경우 인력을 이용, 계단을 이동하는 현실. 1층은 현실상으로 제한구역을 벗어나므로 장애인 변호인 접견실 이전에 난색 표명.**
 민원실을 통하면 계단의 수가 비교적 적으나 민원실 업무대를 거치게 되어 업무의 불편과 추가 시설이 예상됨.
 ... 구치소측은 장애인 변호인 접견편의 시설비용과 타 편의시설비용의 이익 중 어느것이 효용가치가 있나를 검토해 보겠다고 함.
- 민원인을 위한 장애인 시설은 비교적 양호함. 점자블럭, 장애인 주차공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방송, 점자안내문, 엘리베이터, 안내점광판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 * 기타 시설표는 구치소에서 제출한 별첨 1) 참조.

장애인재소자 관리현황

- 법무부 훈령 및 준칙 등에 의거 호송등에 탄력적으로 배려, 대응. (별첨 4 참조)
- 변호인 접견, 면담 등에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장애인 수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보조함. 또한 복지담당관 및 복지담당직원을 통해 수시로 장애인재소자와의 면담.
 수화통역필요시 당 소 교화위원이 내소하여 봉사하며, 현재 복지담당직원중 2명을 수화학원에 등록하여 자체수화통역노력을 꾀하고 있음.
- 운동등은 장애재소자의 자존심을 배려하여 별도 시행하며 종교시간의 경우는 소외감 방지를 위해 통합 시행.

구치소측의 건의사항

- 복지 및 시설예산 외에 장애인재소자를 위한 별도예산 편성이 아쉬움.
- 법무부 추진 장애인전담 교도소 설치에 관한 입법근거가 조속히 제정됨을 요망함.
- * 별첨 1)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표
- * 별첨 2) 장애인 시설 사진
- * 별첨 3) 질의관련 답변서
- * 별첨 4) 계호근무준칙

1. 전국 교정기관별 장애인 수형자 현황

구분 소별	2000. 12. 31					2001. 5. 31				
	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	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
계	602	295	44	55	208	610	288	48	53	221
서울(구)	3	3	0	0	0	15	8	1	0	6
안양(교)	54	21	4	14	15	32	15	2	10	5
영등포(구)	9	7	1	0	1	11	10	1	0	0
성동(구)	6	3	2	1	0	2	2	0	0	0
수원(구)	6	2	0	2	2	4	1	0	3	0
인천(구)	6	6	0	0	0	3	3	0	0	0
영등포(교)	18	8	5	1	4	21	10	3	0	8
수원(교)	23	21	0	1	1	6	4	0	2	0
의정부(교)	4	4	0	0	0	9	7	1	0	1
춘천(교)	6	4	2	0	0	11	8	1	2	0
원주(교)	18	12	5	1	0	18	9	5	4	0
강릉(교)	5	4	0	0	1	6	5	0	0	1
평택(지)	3	2	0	1	0	3	3	0	0	0
대구(교)	29	20	5	4	0	35	25	6	3	1
청송(교)	21	15	0	5	1	29	21	0	6	2
부산(구)	8	6	2	0	0	9	7	2	0	0
부산(교)	24	16	0	2	6	21	17	2	0	2
마산(교)	9	9	0	0	0	7	6	0	0	1
청송1(감)	17	7	1	4	5	20	7	2	4	7
청송2(감)	16	4	1	3	8	17	4	1	3	9
청송2(교)	1	0	0	1	0	2	0	1	1	0
대구(구)	0	0	0	0	0	1	1	0	0	0
김천(소)	0	0	0	0	0	6	5	0	0	1
진주(교)	171	13	1	3	154	185	18	2	4	161
안동(교)	3	3	0	0	0	3	3	0	0	0
경주(교)	5	3	0	0	2	3	1	0	0	2
대전(교)	15	9	2	3	1	17	9	5	3	0
천안(소)	2	2	0	0	0	2	2	0	0	0
청주(교)	19	12	4	3	0	16	10	3	3	0
공주(교)	13	10	3	0	0	11	9	2	0	0
청주(여)	4	3	0	1	0	2	1	0	1	0
홍성(교)	1	1	0	0	0	1	0	1	0	0
논산(지)	2	2	0	0	0	3	2	0	1	0
광주(교)	7	7	0	0	0	11	10	1	0	0
전주(교)	30	25	3	1	1	31	23	5	1	2
목포(교)	14	10	1	0	3	12	9	0	1	2
군산(교)	22	16	2	3	1	12	4	1	0	7
순천(교)	6	3	0	1	2	7	3	0	1	3
제주(교)	0	0	0	0	0	4	4	0	0	0
장흥(교)	2	2	0	0	0	2	2	0	0	0

2. 대구교도소 장애인 수용자 및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

시설명	설치장소	수량	비고
좌식 양변기	미결2사동 하 22실	1	미결장애수용자 수용 *현 공사중(12월완공예정)
"	기결2사동 하 12실	1	기결 장애수용자 수용 화장실 개량공사시 설치 예정 (현 공사중)
휠체어, 목발	의무과	각 2대	장애인 수용자용
계단 없애기	장애인전용주차장, 접수실, 민원실, 병사, 의무과	5	장애민원인 및 장애수용자 편의시설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2개(남·여), 소변기1개(남), 세면기2개(남·여)	5	장애인민원인 편의시설
장애인전용 주차장	접수실앞 주차장 2면, 민원실 앞 주차장 4면	6	"
장애인표지판	민원실 입구 2개, 장애인 화장실 2개	4	"

3. 대구교도소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감실태 현황

■ 재소자 질환별 유형

장애유형	수	비고
시각장애	8명	백내장, 한쪽 눈 장애 등. 양안장애는 없음
손가락, 팔	16명	절단, 장애, 이상변형 등
다리, 지체장애	13명	의족, 다리절단, 소아마비 등
뇌질환	5명	뇌경색, 뇌성마비, 기타 뇌질환
청각장애	2명	
언어장애	3명	농아자, 언어장애 등
기타	3명	화상, 고엽제 등

* 질환별로 분류하여 중복해당자가 있을수 있음. 정신질환자 제외

■ 재소자 수용현황

구분	인원	수용거실
미결	14명	미결 1상 23실 기결 2하 12실 (12명)
기결	39명	기결 2하 16실 (4명) 기결 4하 9실 (12명) 기결 4하 12실 (11명)

■ 현 의료제반 현황

- 병 사 : 20개실 80명 사용. (7월 5일 현재)
- 의 료 인 원 : 정형외과 전문의 1명, 간호사 3명. (일주일에 의사 2명 방문치료)
→ 상근의사제도 생긴지 얼마 안됨 (2000년도부터)
- 진료인원추이 : 1일 약 100~200명 진료, 500여명 투약
- 약 사 : 처방약사가 없다.
→ 간호사가 조제함
- 의 료 비 : 교도소 예산 + 환자 자기비용 (주로 미결수나 환자 본인의 요청)

- 위의 현황에서 보듯이 재소인원 및 의료요하는 수에 비해 그 의료진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치료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임. 또한 전문약사가 없어 간호사만으로 투약행위를 하고 있어 의료절차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
-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자재는 매우 낙후되었고 또한 있는 시설(치과시설, X-레이 등)은 해당전문가가 없는 실정이라 전사용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 필요한 외부의사도 부를 수 없는 실정임.
→ 현재 교도소 의무과장에게 의료기자재 및 전체 현황을 요청해 놓은 상태

4. 대구교도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1. 교도소 내 전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 불임 편의시설 현황 참조
2. 현 시설내 장애인 재소자 방의 현황(개수, 수용인원)은 어떻게 되는가? 또한 일반 재소자 방에서 같이 수용된 장애인이 있는가?
● 미결 장애수용자 1개 거실 지정 수용 -미결 1상 23실 14명
● 기결 장애수용자 4개 거실 지정 수용 -기결 2하 12실 12명
-기결 2하 16실 4명
-기결 4하 9실 12명
-기결 4하 12실 11명
● 일반 재소자와 같은 거실을 쓰는 장애자는 없음
3. 장애인 재소자 수용에 있어 재소자에 대해 장애별 별도관리를 하는가 통합관리를 하는가?
● 장애별 통합관리하고 있음
● 통합관리가 장애수용자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음
4. 일반 재소자 방과 비교하여 장애인 재소자들을 위한 별도 부대시설 현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대구교도소는 30여년전 건축되어 건축 시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편의시설이 전무하였으며 현재 시설 개·보수작업을 통하여 장애 수용자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수용생활을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

5. 조사 또는 재판 시 장애인 재소자 호송과정에 있어 임의적 별도조치가 아닌 규정된 지침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가?

- 계호근무준칙 제291조 및 보안일23500-27258(91.12.10, 출정 재소자에 대한 시승시갑제도 개선지시)에 의거 장애인 수용자가 출정 등의 경우에는 계구사용 시 활동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배려하고 있음

6. 변호인접견, 면담, 면회과정 등 이에 대한 전담직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인 재소과정에 있어 전담교도관 이외에 별도의 담당직원(수화통역사, 사회복지사 등)이 있는가? 있으면 그 현황은 어떠한가? 없다면 담당직원을 둘 계획은 없는가?

- 변호인접견, 면담, 면회 시에는 담당직원이 동행하여 장애 수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음
- 대구교도소 복지담당관(교무과장1명, 교회사 6명)으로 지정된 7명의 직원들이 수시 및 정기 상담을 통하여 고충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 불우장애수용자는 교회위원, 종교위원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소 후에도 취업알선 등을 통해 선도하고있음
- 매년 장애자의 날에는 장애수용자 전원에게 다과회를 베풀고, 선물을 제공하는 등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음

7. 교도소 내 재소자 프로그램(교육, 종교, 운동 등)수행 시 일반재소자와 장애인 재소자에 대해 구별을 두는가?

- 교육 및 종교행사 시에는 사안에 따라 일반 재소자와 구분하는 경우와 통합 실시하는 경우가 있음
- 수용자 운동은 제한된 시간안에 많은 재소자가 운동을 해야함으로 장애인 수용자 운동시간을 별도로 부여할 실정은 되지 못함

8. 장애인 재소자의 인권확보와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차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 또한 이에 대한 장애인 재소자 복지신장 관련에 필요한 예산규모는 어느정도 되며, 예산 외 제도적 애로사항은 없는가?

- 현재 시행중인 수용동 화장실 개수공사 시 미결사동 1개 거실, 기결사동 1개 거실에 좌식 양변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지속적인 수용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경사로 설치, 문턱 없애기 등 장애수용자가 수용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
- 현재 법무부에서는 장애인 재소자의 원활한 처우를 위해 장애인 전담 교도소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바, 입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망됨.

● 교도소 및 구치소 내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경과보고

2001년 1월 10일 본 협회는 대구 지역의 교정기관인

'대구교도소'와 '대구구치소'에 장애인 인권과 편의시설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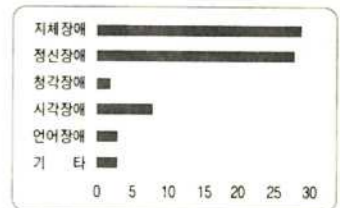
이번 질의서에는 장애인거실 유무, 장애인전용 좌식변기 유무, 의수족 착용 유무,

호송시 계구사용의 문제, 정신지체 또는 정신장애인의 별도 수용 여부 등을 포함시켰다.

1월 31일 두 기관 모두 답신을 해 왔다.

이 조사에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장애인을 따로 수용하는 거실이 대구교도소는 5개소, 대구구치소는 2개소가 있으나 거실부족 등의 수용여건상 통합수용한다고 밝혔다. 특히[표1-1]에서 보듯이 대구교도소의 경우 정신병 소견이 내려진 '정신장애인'의 경우 28명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들은 일반 재소자와 구분없이 통합 수용하고 있다고 밝혀 폭행사고 또는 따돌림의 위험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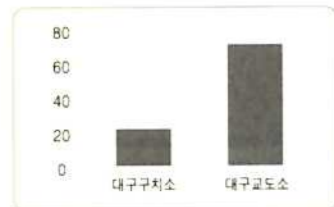
[표1-1] 대구교도소 내 장애인 현황

둘째. 지체장애인에게 필요한 좌식변기를 갖춘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셋째. 교정기관 내 직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호칭을 몰라 "지체불구", "농아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우려되었다.

2001년 7월 5일 기존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형의원과 함께 대구구치소와 대구교도소를 방문하여 실사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①기관 내 전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②장애인거실의 현황, ③장애인수감자의 장애유형별 관리 유무, ④정신지체 또는 정신장애인의 수감실태, ⑤조사 또는 재판시 장애인재소자 호송시 계구사용의 문제, ⑥장애인 재소자를 전담할 전문직원의 필요성, ⑦기관내 프로그램 시 일반재소자와 장애인재소자 간의 차별 유무 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날 실사조사에서는 2001년 5월 현재 전국 41개의 교정기관에 지체장애 288명, 시각장애 48명, 청각장애 53명, 정신장애 221명 등 총 610명의 장애인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표1-2]에서 보듯이 대구교도소에는 시각장애 8명, 지체장애 29명, 정신지체 5명(정신병소견이 내려진 정신장애인 23명은 제외), 청각장애 2명, 언어장애 3명 등을 포함해 75명의 장애인이 수감되어 있으며, 대구구치소에는 23명의 장애인이 수감되어 있었다.



[표1-2] 교정기관의 장애인 현황

이날 대구구치소는 여건상 일반재소자와 장애인 재소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시설 내에 통합수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대구교도소는 장애인은 장애인거실에만 수용한다고 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장애인거실, 장애인화장실의 개·보수 작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지금껏 장애인들은 그들의 특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재소자 관리

로 이종의 수감고통을 겪어 왔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또 일반재소자 방에 수감되어 있을 경우 각종 따돌림과 폭행이 예상되는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이들 장애인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실정이라 관리는 커녕 인원과 약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역시 전무해 점자블럭, 점자안내문, 스피커시설, 안내 점광판 등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교도소 내 수화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의료시설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대구교도소의 경우 2001년 7월 현재 2,300여명의 재소자가 있는데 비해 전문의 1명과 간호사 3명이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전문 약사가 없어 간호사가 조제하고 투약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자재는 매우 낙후되었으며 그나마 있는 기자재도 전문의가 없어 전시용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국가교정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임산부들이 다수 수감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 기고

갈길 먼 장애인 인권의 길

이원형 /국회의원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보장법)에서 규정한 편의시설설치대상 공공시설에서 빠져있는 교정시설을 공공시설에서 포함시켜야...

**장애인 전용 교정시설을 건립
복지당국과 법무부와의 유기적 협조**

지난 7월 5일, 윤수동 회장을 비롯한 대구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 분들과 함께 나서게 된 교정시설 장애인 관련 실태조사에 나섰던 저로서는 너무나 갈길이 멀고 둘러보아야 할 곳들이 수도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구구치소와 교도소를 방문하기 위한 준비단계부터 부딪힌 것은 우리 방문팀의 인원구성에서부터 걸린 제약이었습니다. 결국 대동하기로 한 다른 몇 분과 기자들은 교정시설측의 상부의 방침이라는 말에 입구에서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고 저를 비롯한 몇몇 인원만이 발걸음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기분은 착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시간에 방문한 대구구치소, 지어진지 몇 년

되지 않은 탓인지 민원인을 위한 장애인의 편의시설은 비교적 갖추어진 편이었습니다. 또한 대구교도소의 경우도 다른 곳에 비하면 흉내내는 수준이고 대구구치소에 비해서도 매우 열악했지만 오래된 건물에 몇가지의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들여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점검해보고 싶었던 교정수용자의 인권은 장애인·비장애인을 불문하고 고려자체를 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 변호인 접견 자체부터 시작해서, 수용·수형생활 등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죄 짓지 말고, 여기 들어오지 마라"였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서 면담했던 한 장애인 미결수